



2022년 IPAT(지식재산능력시험)

대비 단기속성 과정

2022.11.

특허법인 지원
심성렬 대표변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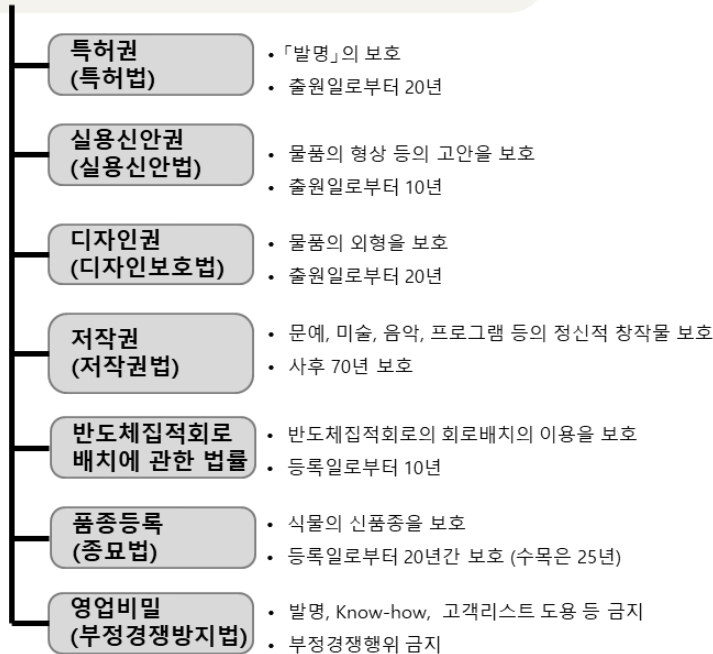


| 출제분야 | | 주요 내용 |
|---------|-----------|--|
| 지식재산 제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 입문 ▪ 지식재산 법, 제도 |
| 지식재산 창출 | 지식재산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 발굴 ▪ 직무발명 운영 ▪ 지식재산 권리화 |
| | 지식재산 정보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정보조사검색 및 분석 |
| 지식재산 보호 | 지식재산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 유지 및 관리 ▪ 지식재산 분쟁 및 방어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 경영 ▪ 지식재산 라이선스 |
| 지식재산 활용 | 지식재산 평가거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 사업화 ▪ 지식재산 가치평가 ▪ 지식재산 금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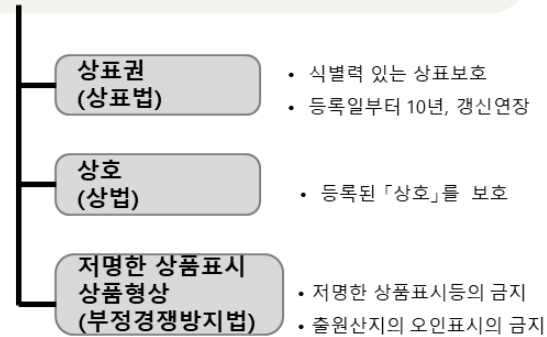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1. 지식재산 보호 대상 및 개관

-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호)
-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의해 인정/보호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

지식창조물에 대한 권리



영업표식에 대한 권리



| 지식재산권법 | 법의 목적 | | | | |
|------------------------|------------------|---------|----------|--------------|-------------|
| | 산업발전 | 수요자의 이익 | 문화의 향상발전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
| 특허법 | ○ | | | | |
| 실용신안법 | ○ | | | | |
| 디자인보호법 | ○ | | | | |
| 상표법 | ○ | ○ | | | |
| 저작권법 | | | ○ | | |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실계에 관한 법률 | | | | ○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 | |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 ○ (농림수산업의 발전) | | | | |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1. 지식재산 보호 대상 및 개관

|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저작물 |
|-------|--------------------------------------|--------------------------------|--|------------------------------------|--------------------------|
| 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발명 (대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고안 (소발명)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 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 보호 대상 | 모든 발명 | Only 물품의 형상,구조에 관한 고안 | 물품의 디자인 |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장(브랜드) | 창작물 |
| 존속 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등록일로부터 권리발생) | 출원일로부터 10년 (등록일로부터 권리발생) | 출원일로부터 20년 (등록일로부터 권리발생) | 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가능) |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70년(유형별 차이) |

특허

- LTE, 5세대 통신 방식 기술
- 무선 충전 속도, 용량 개선 기술
- 메모리 관리 기술
- 애플리케이션 연동 기술 등

디자인

- 스마트폰 자체의 형상
- 화상 디자인(아이콘 등)
- 스마트폰 케이스
- 스마트폰 거치대



저작물

- 홍보 동영상
- 제품 설명서/파일 등

실용신안

- 스마트폰 케이스
- 스마트폰 보호 필름
- 스마트폰 거치대
- 셀카봉

상표

- 스마트폰 명칭 (갤럭시, 아이폰 등)
- 제작사 명칭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등)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1. 지식재산 보호 대상 및 개관

| 대상 | 예시 | 적용 법률 | 소관 관청 | 권리의 발생 | 보호기간 |
|---------|----------------------|----------------------|----------|------------------------------|----------------------------|
| 발명 | 음성부호화방법, 송수신회로 | 특허법 | 특허청 | 심사 후 등록 |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출원 후 20년 |
| 고안 | 낙하방지용 스트랩 | 실용신안법 | 특허청 | 심사 후 등록 |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출원 후 10년 |
| 디자인 | 휴대전화의 외관디자인 | 디자인보호법 | 특허청 | 심사 후 등록 (일부심사 예외 있음) |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출원 후 20년 |
| 상표 | 갤럭시, 아이폰 | 상표법 | 특허청 | 심사 후 등록 | 등록 후 10년(갱신 가능) |
| 저작물 | 전화기 화면상의 그래픽 | 저작권법 | 문화체육관광부 | 창작과 동시에 발생 | 저작자 사후 70년 |
| 컴퓨터프로그램 | 전화기 내의 ROM에 기록된 프로그램 | | | | 공표 후 70년 |
| 영업비밀 | 핸드폰 제조노하우, 고객리스트 등 | 부정경쟁방지법 | 특허청 | 비공지성 + 경제적 유용성 + 비밀관리성 | 비밀관리기간 |
| 반도체배치설계 | 전화기 내 LSI의 회로패턴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특허청 | 방식 심사. 등록 | 등록 후 10년 |
| 식물 신품종 | 새로 개량한 품종 | 식물신품종보호법 | 농림축산 식품부 | 심사 후 등록 | 등록 후 20년 (과수 및 임목은 25년) |
| 상호 | 삼성전자주식회사 | 상법 | 법원 | 사용과 동시에 발생 | 사용하는 동안 |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1. 지식재산 보호 대상 및 개관

| | | |
|---|---|---|
| <p>1)</p>  | <p>출원 출원서류 접수 및 수수료 납부 단계</p> | <p>출원인, 발명자, 발명의 명칭, 심사청구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등록)요건을 판단하므로 빨리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
| <p>2)</p>  | <p>방식심사 제출된 서류의 형식 및 수수료 납부 확인</p> | <p>특허청에 제출된 서류가 특허법령이 정하는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주로 형식적, 절차적인 흠결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p> |
| <p>3)</p>  | <p>실체심사 의견제출통지서 등 발송</p> | <p>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분류가 되고, 특허청 심사관은 자신의 전문분야에 따라 실체심사를 합니다. 특허(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심사관은 의견 제출통지서로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p> |
| <p>4)</p>  | <p>보정서(의견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해 제출</p> | <p>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p> |
| <p>5)</p>  | <p>등록/거절결정 특허(등록) 또는 거절결정서 발송</p> | <p>제출된 의견서 및 보정서를 통하여 거절이유가 극복이 되면 특허(등록)결정을, 그렇지 못하면 거절 결정됩니다.</p> |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2. 특허와 영업비밀



| 구분 | 특허 | 노하우 |
|-----------|--------------|---|
| 공개 여부 | 있음 | 없음 |
| 성립요건 | 특허법 제2조 제1호 | 특별한 정의 규정 없음 |
| 특허요건 | 필요 | 불필요 |
| 보호기간 | 일정 기간 | 비밀이 유지되는 한 제한 없음(단, 공개되더라도 일정한 경우 특허법 제103조에 의해 보호 가능) |
| 보호범위 | 청구범위 기재 발명 | 불명확 |
| 독점배타성 | 있음 | 없음 |
| 침해에 대한 구제 | 특허법상 민형사상 조치 | 계약 내용에 의해 보호(단, 일정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 가능) |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3. 특허와 실용신안



| 구분 | | 특허제도 | 실용신안제도 |
|------------|---------------------|-------------------------------------|---|
| 보호대상 | | 발명(방법발명, 물질발명, 용도발명도 특허 가능) |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 (∴ 물품성 요, 방법 또는 물질에 관한 고안은 등록 불가) |
| 성립요건 | | 고도성 필요 | 고도성 불필요 |
| 등록 요건 | 진보성 | 쉽게 발명 | 극히 쉽게 고안(즉, 낮은 수준의 진보성) |
| | 부등록사유 | 공서양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
| 출원 및 심사 | 도면 첨부 |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적으로 첨부 미첨부 시 불수리 |
| | 심사청구기간 | 출원일로부터 3년 | 출원일로부터 3년 |
| 효력 | 존속기간 |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
| |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 가능 | 불가 |
| | 효력범위 제한 | 의약, 의약제법 방법 적용 가능 | 의약, 의약제법 방법 적용 불가 |
| | 간접 침해 | 물건발명, 방법발명 모두 적용 가능 | 방법발명, 물질발명은 적용 불가 |
| | 생산방법 추정 | 있음 | 없음 |



주체적 특허요건

권리능력이 있을 것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일 것 ★★

특허청 직원 및 심판
원 직원이 아닐 것

실체적 특허요건

발명의 성립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

진보성 ★★★

선출원주의 ★★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

불특허사유가 없을 것 ★

절차적 특허요건

명세서 기재 ★★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

기타 특허요건

조약에 위반된 경우

보정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분할출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변경출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1. 권리능력이 있을 것

- 권리능력이란 일반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
- 내국인인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해 인정. 다만, 법인은 승계에 의해서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의 권리자가 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의제되어 권리주체
- 외국인의 권리능력: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등을 인정하는 경우,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따라 특허권 등을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권리능력 인정

2.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일 것

- 발명을 완성한 때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발명'은 사실행위이므로 자연인만이 발명자
- 승계인은 특허출원 전,후를 불문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있고,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가능
- 공동발명: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이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함. 단순한 보조자, 관리자, 위탁자, 자본주 등은 공동발명자는 되지 못하지만, 공동출원인은 될 수 있음

3.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이 아닐 것

-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음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4. 특허요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 **의의** 발명의 완성에 의해 발생되어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권리,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확정 또는 설정 등록되기 전까지 인정되는 권리
2. **이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출원 전, 후를 불문하고 이전 가능하며, 권리 지분에 대한 일부 이전 가능
3. **질권설정 금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 불가
4. **지분양도** ①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분 양도 가능 ② 지분의 상속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가능하며, 공유자끼리의 지분 양도는 지분 비율의 변동에 불과하므로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가능
5. **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함
6. **공동심판청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이에 대한 심판청구시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함

| 이전 형식 이전 시기 | 일반승계 | 특정승계 |
|----------------|--|--|
| 출원 전 | 1. 사유발생 시 효력발생 2. 승계인이 특허출원 → 제3자 대항요건 3. 동일자 출원 ① 협의제, 협의명령 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승계의 효력 불발생 → 무권리자 출원으로 간주 | |
| 출원 후 | 1. 사유발생 시 효력발생 (∵ 권리의 단절을 막기 위해) 2. 특허청장에 신고 필요 | 1. 승계인의 출원인변경신고 → 효력발생 요건 2. 동일자 명의변경신고 ① 협의제, 협의명령 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명의변경 신고의 효력 불발생 → 피승계인이 출원인인 상태로 출원절차 진행 |

❖ 발명의 성립성이 없는 경우

- ① 자연법칙 그 자체 :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가속도의 법칙, 열역학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 ② 자연법칙에 위배된 것 : 영구운동의 기계장치
- ③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것 :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경제법칙, 수학기공식, 논리학적 법칙, 작도법 등), 인위적인 약속(게임의 규칙 등) 또는 인간의 정신 활동(영업계획, 금융방법 그 자체 등)
- ④ 컴퓨터프로그램 언어 자체, 컴퓨터프로그램 자체
- ⑤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
- ⑥ 정보의 단순한 제시 : 녹음된 음악에만 특징이 있는 CD, 컴퓨터프로그램 리스트 자체 등
- ⑦ 미적 창작물
- ⑧ 기능 : 악기 연주방법, 공을 손가락으로 잡는 방법과 공을 던지는 방법에 특징이 있는 투구방법
- ⑨ 발견
- ⑩ 단순한 사상에 불과한 것
 - ㉠ 오존층의 감소에 따른 자외선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구 표면 전체를 자외선 흡수 플라스틱 필름으로 둘러싸는 방법
 - ㉡ 지구와 달을 연결하는 다리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5. 특허 등록요건과 산업상 이용가능성

| 주요 거절이유 | 의미 |
|--------------------------------|--|
|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명이 산업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 (예) 자연법칙 자체, 인간의 정신적 판단이나 행위가 개입되는 경우,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 및 치료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등 |
| 신규성 (특허법 제29조 제1항 단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등록여부 판단시점(출원일) 전에 공개된 발명과 다를 것 |
| 진보성 (특허법 제29조 제2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등록여부 판단시점(출원일) 전에 공개된 기술로부터 현저히 개선될 것 |
| 확대된 선출원주의 (특허법 제29조 제3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특허출원일 전에 특허/실용신안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 후에 출원공개/등록공고된 다른 특허/실용신안출원의 최초 첨부된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발명/고안과 동일한 경우, 당해 출원은 특허받을 수 없음 |
| 선출원주의 (특허법 제36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한 발명에 대해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을 경우, 먼저 출원한 자 우선 |
| 공서양속 등에 반하지 않을 것 (특허법 제32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서양속이나 공중의 위생을 해하지 않을 것 (예) 아편흡입기구, 위조지폐 제조기구 등 |
|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 (특허법 제42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방식에 맞추어 기재 |
| 1 특허출원의 범위 (특허법 제45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의 균의 발명에 대해 하나의 특허출원 |

❖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제 Point

① 의료업과의 관계 : 인체를 직접적인 구성요소로 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

- 직접적인 구성요소로 하는 수술방법, 치료방법, 진단방법,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것을 치료를 위해 채취한 자에게 되돌려 줄 것을 전제로 처리하는 방법(혈액 투석방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X
- 인체를 간접적인 구성요소로 하거나 구성요소로 하지 아니한 ㉠ 사람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배출된 것(소변, 변, 태반, 모발, 손톱) 또는 채취된 것(혈액, 피부, 세포, 종양, 조직)을 처리하는 방법이 의료행위와는 분리 가능한 별개의 단계로 이루어진 방법인 경우 또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인 경우, ㉡ 인체를 직접적인 구성요소로 하지 아니한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장치 및 의약품, ㉢ 인간 이외의 동물 한정 명시의 경우, ㉣ 진단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의사의 임상적 판단(의학적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질병 또는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정신적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 O
- 의료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인체를 구성요소로 하더라도 산업상 이용가능성 O
-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미용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이를 구별 및 분리할 수 없는 방법은 치료방법으로 간주되어 산업상 이용가능성 X

② 경제성과의 관계 : 경제성 유무는 고려 요소 X

③ 타법과의 관계 : 타법의 규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법에 의해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한 X

④ 결과물과의 관계 : 발명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발명을 이용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활용상태 고려 대상 X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6.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비교

| 구분 | 선출원주의 |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
|--------------------|--|---|
| 발명자·출원인 동일 | 동일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 발명자나 그 출원할 때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적용 |
| 대상 | 선·후출원의 청구범위 | 다른(선) 출원의 최초 명세서·도면과 그 (후)출원의 청구범위 |
| 무효·취하·포기·특허거절결정 확정 | 선출원의 지위 불인정 (단, 협의 불성립 등으로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 인정) | 무효·취하·포기·특허거절결정 확정 전 출원공개·등록공고되었으면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인정 |
| 무권리자 | | 무권리자의 출원이 출원공개·등록공고되었으면 제3자에 대해서는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나, 정당권리자에 대해서는 발명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불인정 |
| 동일출원 | 협약제, 협약명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특허 가능 | 적용하지 아니함 |
| 출원공개·등록공고 | 출원공개·등록공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 다른 출원이 출원공개·등록공고된 경우에만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 |

❖ 출원발명의 등록금지효

선출원의 지위

- 범위: 청구범위
- 지역: 국내
- 판단: 동일성
- 비교: 출원의 무효, 취사, 포기, 거절결정확정, 무권리자 출원은 부적용

출원일 ~ 1년 6개월 경과

특허 출원

출원 번호

출원 공개

공개 번호

특허 등록

등록 번호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 범위: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
- 지역: 국내
- 판단: 동일성
- 비교: 발명자, 출원인 동일시 부적용

공지기술의 지위

- 범위: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
- 지역: 국내, 국외
- 판단: 동일성, 용이성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7. 신규성 및 진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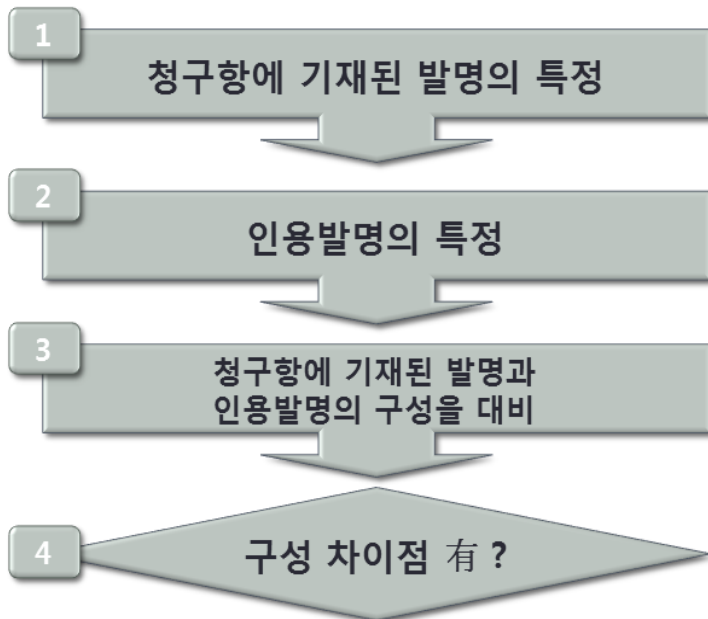
신규성

-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발명과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음
-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① 공지된 발명, ② 공연히 실시된 발명, ③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④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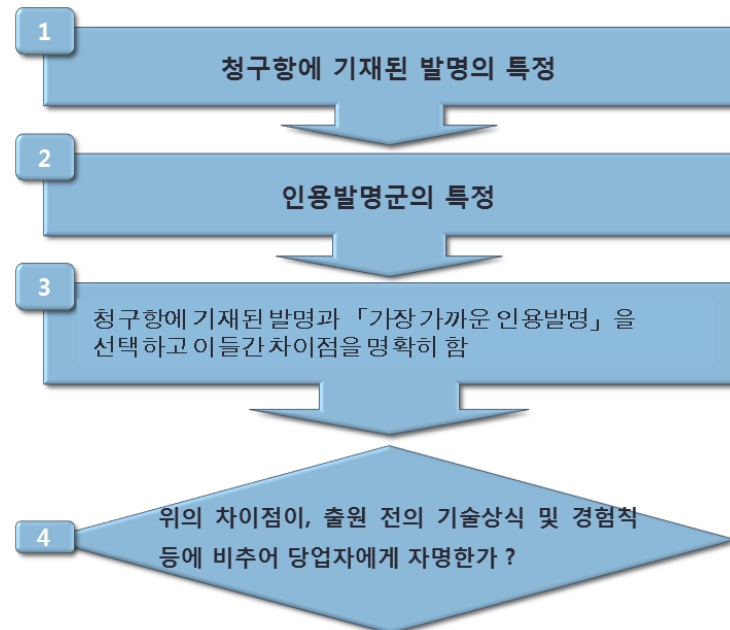
진보성

- 종래기술(들)로부터 동일하지 않을 뿐 효과 차이가 미미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음
-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① 공지된 발명, ② 공연히 실시된 발명, ③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④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들)로부터** 기술분야에 있는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진보성이 없는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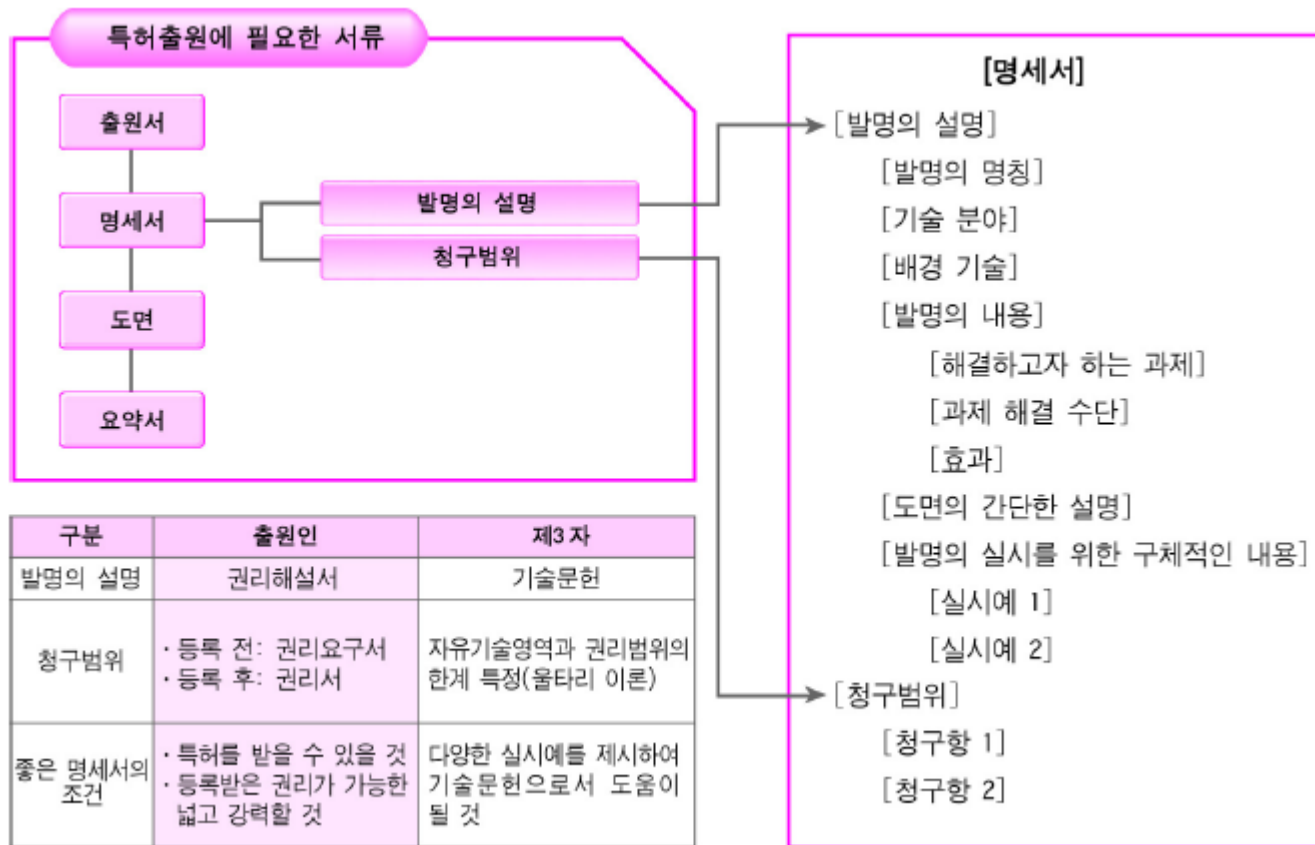
<신규성의 판단>



<진보성의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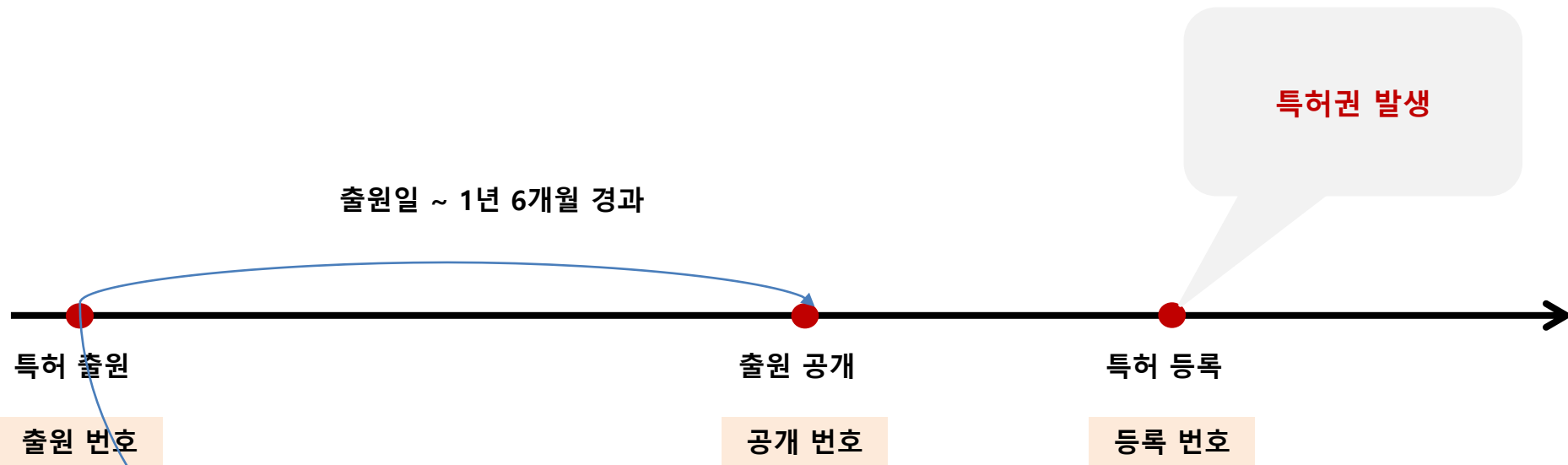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8. 특허출원 서류 및 절차적 특허요건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8. 특허출원 서류 및 절차적 특허요건

❖ 특허출원에 대한 출원공개 및 등록

- 특허출원 후 일반적인 심사과정에 의할 경우 특허청 접수(출원) 이후 등록까지 1년 내지 2년 소요
- 특허출원번호, 특허공개번호, 특허등록번호가 시기별로 부여
- 우선심사에 의할 경우, 특허청 접수(출원) 이후 등록까지 6개월 내지 9개월 가량으로 단축가능



- 특허출원시부터 3년 이내에 심사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에서 심사
- 우선심사, (정규) 심사 선택가능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8. 특허출원 서류 및 절차적 특허요건

1.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유형

㉠ 청구항의 구성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암시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 청구항에는 구체적인 수치한정을 하고 있으나 발명의 설명에는 그 수치에 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 청구항에는 초음파 모터를 이용한 발명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있으나 발명의 설명에는 초음파 모터를 이용한 발명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직류모터를 이용한 발명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다만, 발명의 설명에는 그 실시예로 직류모터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으나 직류모터만이 아니라 다른 모터도 이용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고 출원 당시의 기술 상식에서 판단했을 때 초음파 모터를 이용한 실시도 가능한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발명의 설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상호 간에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양자의 대응관계가 불명료한 경우

㉢ 청구항의 구성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means)' 또는 '공정(step)'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 수단 또는 공정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출원 시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에 비추어 보아 청구된 발명의 범위까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내용을 확장하거나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

예) 청구항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 예를 들어 달성하고자 하는 에너지 효율의 범위에 의하여 발명을 특정하려고 하고 있으나, 발명의 설명에는 특정 수단에 의한 실시예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원 당시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으로도 그 제시된 실시예를 청구된 발명 전 범위로 확장하거나 일반화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청구항에는 원하는 성질에 의하여 정의된 화합물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특정 용도의 치료제로서 청구되어 있지만, 발명의 설명에는 청구항에 포함된 일부의 구체적인 화합물에 대해서만 해당 치료제로서 유용성이 확인되어 있고, 이를 벗어나는 청구항에 포함된 화합물에 대해서는 그 유용성이 출원 당시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으로도 인정될 수 없는 경우

㉤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발명을 청구하는 경우

예) 전달력 증가를 위한 기구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항에는 전달력 가변 기구를 기재하고 있어 전달력이 감소되는 것까지 포함함으로써 발명의 설명을 벗어난 발명을 청구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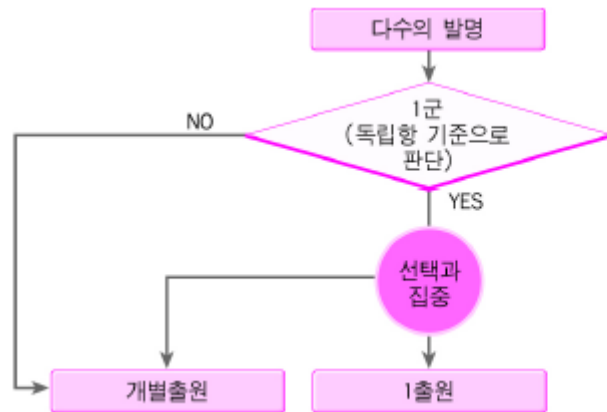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8. 특허출원 서류 및 절차적 특허요건

2. 청구항의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간결하지 않은 유형 예

- '소망에 따라', '필요에 따라', '특히', '예를 들어', '및/또는' 등의 자구(字句)와 함께 임의 부가적 사항 또는 선택적 사항이 기재된 경우(‘A 및/또는 B’는 ‘A 및 B’인 경우와 ‘A 또는 B’인 경우를 함께 기재한 것이므로, 발명이 ‘A 및 B’인 경우와 ‘A 또는 B’인 경우 모두에 대해 각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및/또는’의 기재로 하나의 청구항에서 이질적인 복수의 발명을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 청구항이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수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 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 '주로', '주성분으로', '주공정으로', '적합한', '적량의', '많은', '높은', '대부분의', '거의', '대략', '약' 등 비교의 기준이나 정도가 불명확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
- '~을 제외하고', '~이 아닌'과 같은 부정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
- 수치한정발명에서 '~ 이상', '~ 이하', '0~10'과 같이 상한이나 하한이 불명확한 수치한정이나 0을 포함하는 수치한정(0을 포함하는 성분이 필수 성분이 아니라 임의 성분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한 경우 또는 '120~200°C, 바람직하게는 150~180°C'와 같이 하나의 청구항 내에서 이중으로 수치한정을 한 경우(여기서 '임의 성분'이란 출원인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아도 좋다고 인식하는 성분으로, 명세서에 그 취지가 명확히 기재된 성분을 말한다.)
- 청구항에 여러 가지 종류의 기어가 기재되어 있고 그중 어느 특정 기어를 지시할 때 '상기 평기어', '전기 베벨기어' 등과 같이 지시의 대상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상기 기어', '전기 기어' 등과 같이 기재한 결과 어느 기어를 지시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
- 합금에 관한 발명에서 합금 성분 조성 상호 간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서 수치 또는 문장만으로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첨부도면 제1도의 점 A(...), B(...), C(...), D(...)로 둘러싼 범위 내의 Fe, Cr, Al 및 2% 이하의 불순물로 구성되는 내열전열합금'과 같이 도면을 대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8. 특허출원 서류 및 절차적 특허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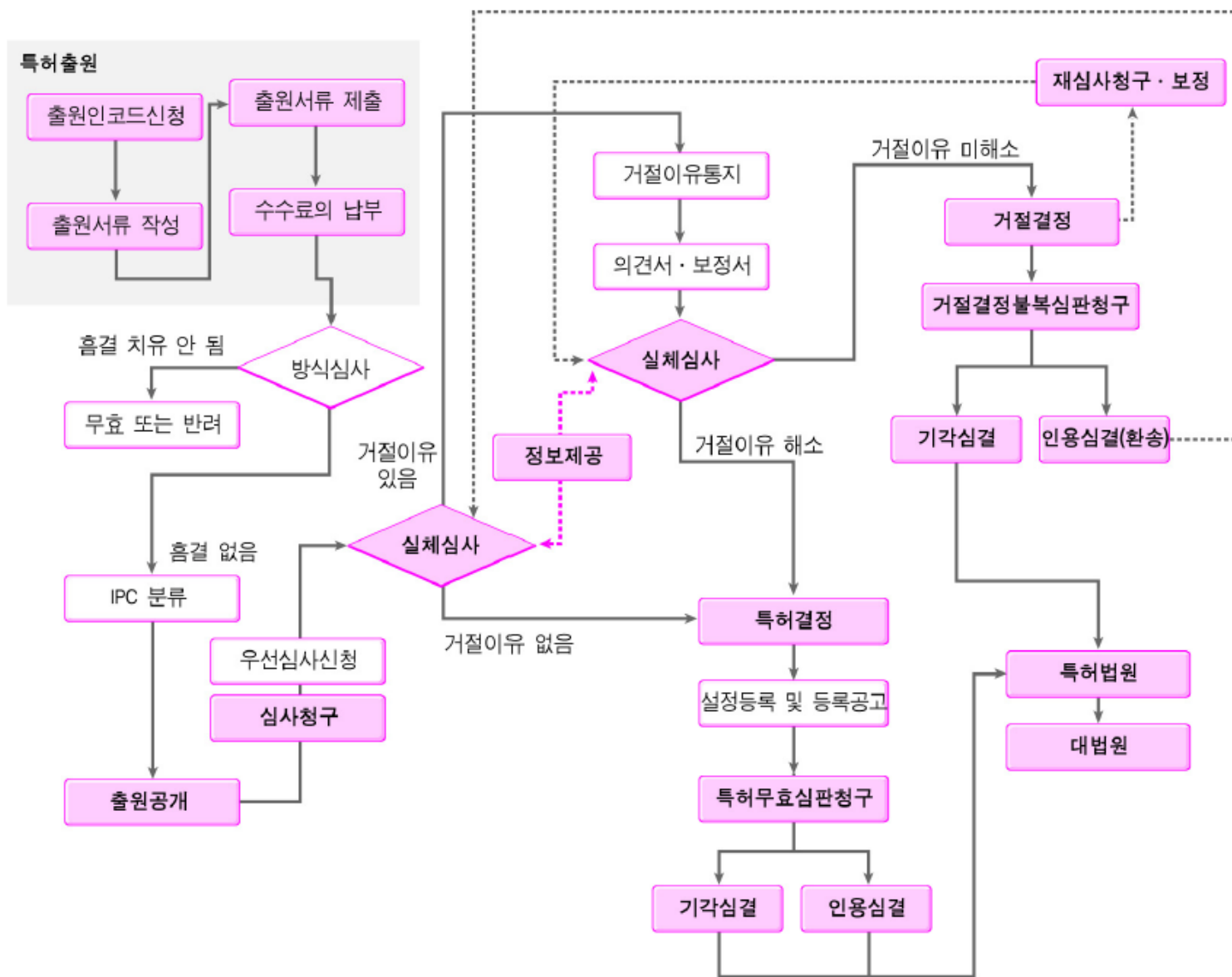
❖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단일성



| 구분 | 유사기술 (1군발명) | 비유사기술 |
|---------|--|-------|
| 개별 특허출원 | ○ | ○ |
| 1특허출원 | ○ | × |
| 비고 | 유사기술의 개별 특허출원과 1특허출원의 선택은 비용, 등록가능성, 권리행사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 구체적 예 | 설명 |
|--|--|
| 【청구항 1】 직류모터용 제어회로 A 【청구항 2】 직류모터용 제어회로 B 【청구항 3】 제어회로 A가 있는 직류모터를 이용하는 장치 【청구항 4】 제어회로 B가 있는 직류모터를 이용하는 장치 | 제어회로 A는 하나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고, 제어회로 B는 제어회로 A와는 관련이 없는 또 다른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다. 따라서 청구항 1과 청구항 3 사이 또는 청구항 2와 청구항 4 사이에는 단일성이 있으나, 청구항 1과 청구항 2 사이 또는 청구항 3과 청구항 4 사이에는 단일성이 없다. → 따라서 최소한 2개 이상의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 |
| 【청구항 1】 램프용 필라멘트 A 【청구항 2】 필라멘트 A가 있는 램프 B 【청구항 3】 필라멘트 A가 있는 램프 B와 회전테 C로 구성되는 서치라이트(searchlight) | 상기 모든 청구항에 공통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은 필라멘트 A이다. 청구항 1, 2 및 3 사이에는 단일성이 존재한다. → 따라서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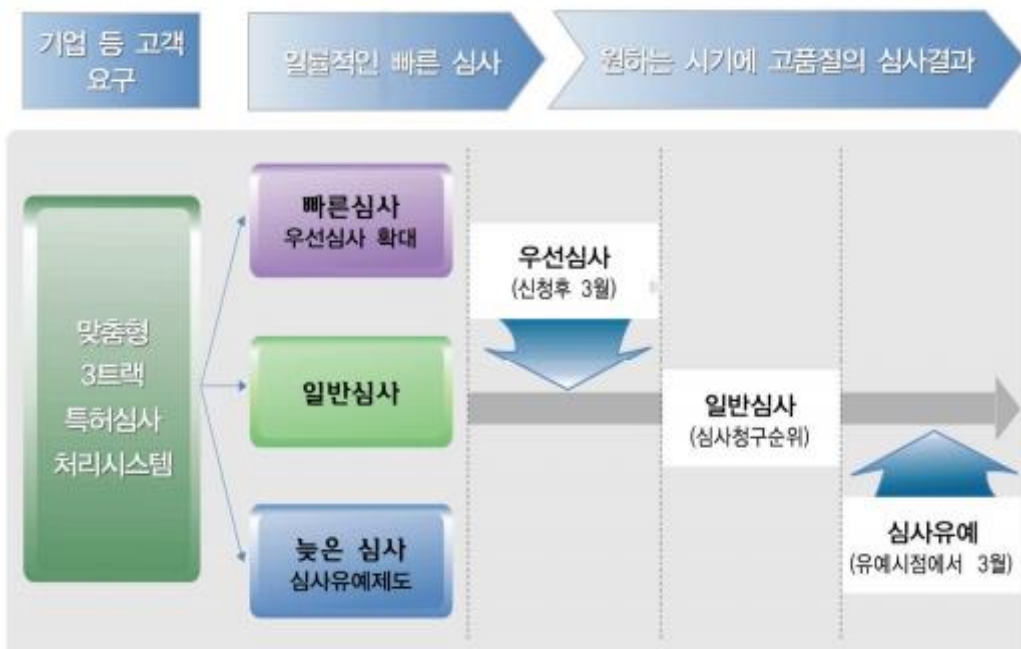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9. 특허출원 이후 권리화 절차 및 제도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9. 특허출원 이후 권리화 절차 및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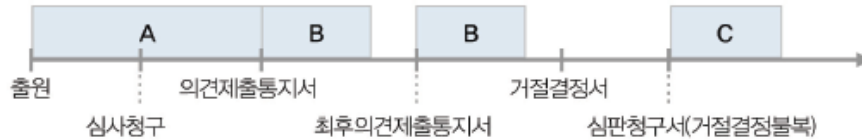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

- (1)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 방위산업 분야의 특허출원
 - ②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③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 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 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 ⑤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 출원
 - 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 ⑦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 ⑧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 ⑨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 ⑩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 실시 준비 중인 특허출원
 - ⑪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⑫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 ⑬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9. 특허출원 이후 권리화 절차 및 제도

❖ 특허출원 이후 권리화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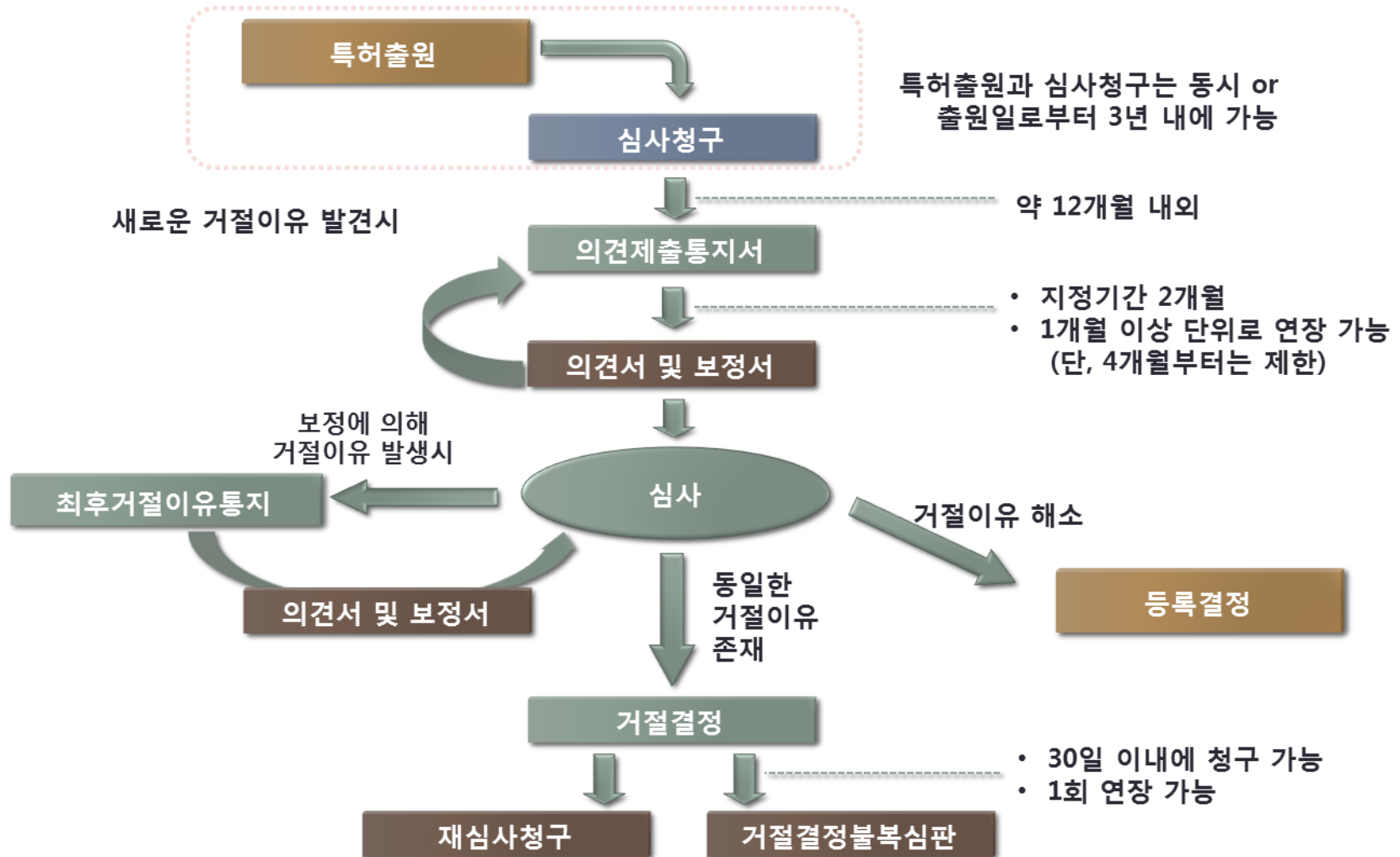


- A구간 : 출원 후 의견제출통지서 발송 전까지 제출가능
(제출원인이 된 서류 : 출원서의 접수번호를 기재)
- B구간 :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제출기일까지 제출가능
(제출원인이 된 서류 : (최후)의의견제출통지서의 발송번호를 기재)
- C구간 :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까지
(제출원인이 된 서류 : 심판청구서의 접수번호를 기재)

| 개념 | 내용 | 대응방안 |
|----------|---|--|
| 최초거절이유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절이유통지 전부터 원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절이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서/보정서 분할/변경출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재출원 |
| 최후거절이유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거절이유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한 보정에 의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 cf.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에 한 보정에 의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 보정각하 | |
| 특허거절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절이유가 동일한 경우(법조문의 동일성, 인용발명의 동일성) cf. 심판단계에서 거절이유가 동일한 경우, 기각심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심사청구 거절결정불복심판 분할/변경출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재출원 |
| 보정각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후거절이유통지 이후의 보정이 신규사항추가 또는 보정범위제한(청구범위 확장 등)을 위반하거나 보정에 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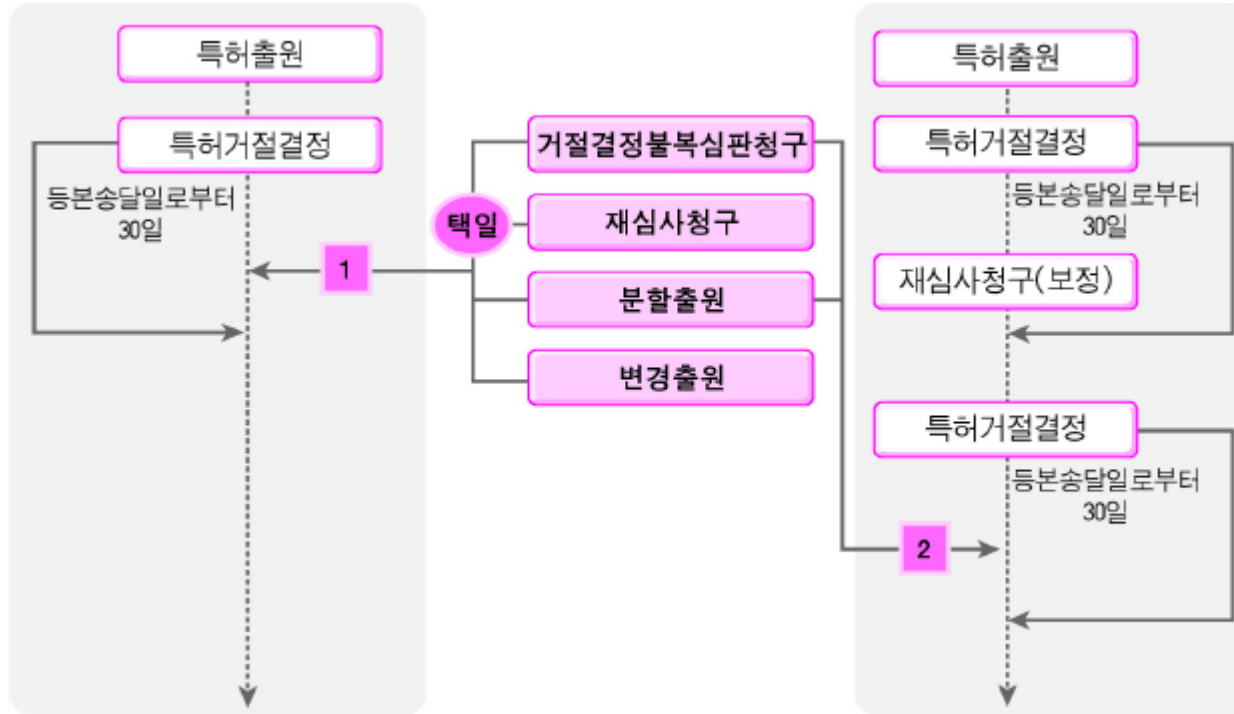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9. 특허출원 이후 권리화 절차 및 제도

❖ 특허출원 이후 권리화 절차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9. 특허출원 이후 권리화 절차 및 제도

❖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의 대응방안





❖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범위

•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존속 중에 청구범위에 따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 이를 위한 청약(전시를 포함)할 권리를 가짐

| 주요 거절이유 | 의미 |
|---------|--|
| 적극적 효력 | • 독점성에 기인한 효력으로서 특허권자만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전용권, 독점권) |
| 소극적 효력 | • 배타성에 기인한 효력으로서 정당한 권원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면 이를 침해라고 하여 배제할 수 있는 권리(금지권, 배타권) |

•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1)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 2)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
- 3) 특허출원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특허출원 당시에 선의로 국내에서 이미 그와 같은 발명을 사업으로 실시하거나 실시준비를 하는 경우)
- 4)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



❖ 실시권의 종류 및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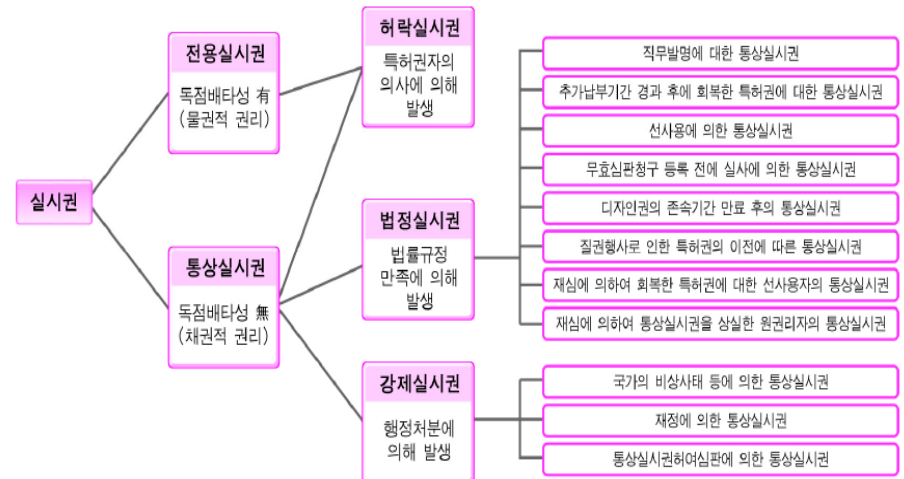
| 항목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
| 정의 |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있는 물권적 권리 | 독점배타성 없이 단순히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 |
| 발생요건 | 설정등록 | 설정등록 없이도 효력은 발생하지만, 설정등록시 제3자 대항요건 성립 |
| 이전 |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없이는 이전 불가 |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 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 없이는 이전 불가 |
| 처분 |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음 | <p>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음</p> <p>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 또는 특허심판원의 심판(특허청장의 결정)에 의해 발생 가능</p> |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10. 특허권의 효력 및 내용

❖ 실시권의 종류 및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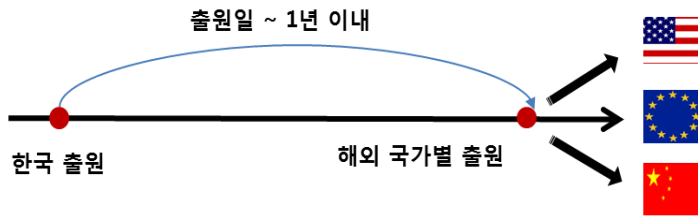
| 구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 | |
|----|---|---|--|------------------------|-------|
| | | 허락실시권 | 법정실시권 | 강제실시권 | |
| 의의 |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독점·배타적으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 | |
| 성질 | 부수적, 물권적 | 부수적, 채권적(중복설정 가능) | | | |
| 발생 | 계약+등록 | 계약 | 법률 규정 만족 | 법률 규정 만족+ 행정처분 | |
| 효력 | 효력 범위 |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 |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정한 범위 | |
| | 효력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발명 실시 가능 타인 실시 금지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발명 실시 가능 타인 실시 금지 불가능 | | |
| 변동 | 이전 | 사업과 함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실시권 → 실시사업과 함께만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한 실시권 → 실시권의 허락 원인이 된 원권리와 함께 | | |
| | 실시권 허락 | 특허권자의 동의 | 불가 | | |
| | 질권 설정 | 특허권자의 동의 |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 | | |
| | 특허권 포기 | 동의권 ○ | 동의권 ○ |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자만 동의권 ○ | 동의권 × |
| | 실시권 포기 | 통상실시권자, 질권자의 동의 | 질권자의 동의 | | |

| 구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 |
|-------|---|-------|---|--------------|
| | | 허락실시권 | 법정실시권 | 강제실시권 |
| 소멸 | 특허권의 소멸(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전용실시권 또는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수용, 실시권의 포기, 혼동, 설정기간의 만료, 설정계약의 해지 등 | | | |
| 대가 | 약정 시 정한 대가 | | 대가 지급 유무가 나뉨 | 행정처분 시 정한 대가 |
| 등록 효과 |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이 효력발생요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상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이 대항요건 법정실시권은 설정등록 없이도 대항 가능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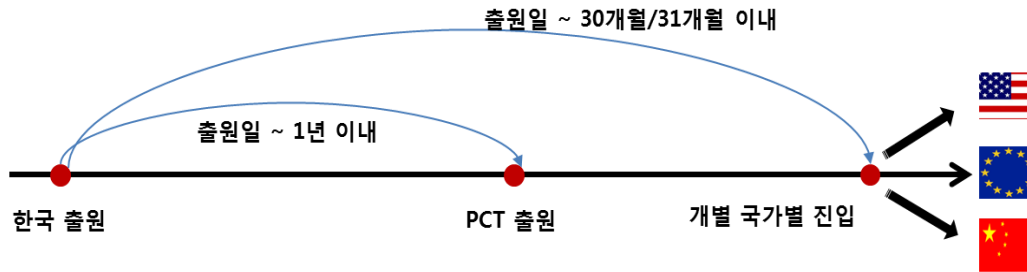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11. 지식재산의 국제적 보호

• 개별국가별 출원



• PCT 출원 이용



● **공지예외 주장 기간: 한국, 미국은 12개월, 일본, 중국, 유럽은 6개월**

| 국가 | 의사에 의한 공지 | | | | 의사에 반한 공지 | 박람회 출품 | 출원 시기 |
|-----|-------------------------|--------|----------------|-----------------------|--------------|--------------|--------------|
| | 시험 | 간행물 기재 |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공지 |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 서면 발표 | | | |
| 일본 | ○ | ○ | ○ | ○ | ○ | ○(박람회 종류 제한) | 공지일로부터 6월 이내 |
| 중국 | × | × | × | ○ | ○ | ○(박람회 종류 제한) | 공지일로부터 6월 이내 |
| EPO | × | × | × | × | ○ (요건 엄격) | ○(박람회 종류 제한) | 공지일로부터 6월 이내 |
| 미국 | ○(적용 대상을 열거하지 않고 넓게 허용) | | | | | |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 |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11. 지식재산의 국제적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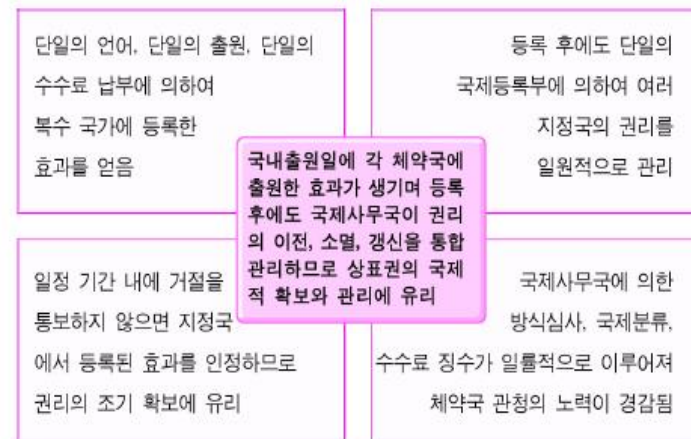
| 항목 | PCT 해외출원 | 일반해외출원 |
|----------------|--|--|
| 출원 | 하나의 방식으로 PCT 출원을 하면 세계 여러 국가에 출원되는 효과발생 | 각 국가의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각 국가에 개별 출원 |
| 우선기간 이용 | 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 PCT 출원 | 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 각 국가에 모두 출원 |
| 국내 단계 진입 기간 확보 | 국내 단계 진입기간(30/31개월)의 확보로 무분별한 해외출원 방지: 사업화 및 시장 국가 예측이 곤란한 경우 최종적인 결정의 연기 가능 | - |
| 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단계 진입 시기를 달리 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분산 • 국제출원료, 국제조사료 등이 추가로 소요 | 소요 비용의 분산이 되지 않음 |
| 보고서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단계에서 국제조사보고서, 국제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국내 단계 진입 여부 결정 가능 • 등록 가능성이 없는 경우 국내 단계 진입을 포기하여 불필요한 비용의 절감 가능 | 국내 단계 진입 전에 특허성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공적 보고서 없음 |
| 보정 | 국제 단계에서 PCT 제19조 보정, PCT 제34조 보정을 통해 등록 가능성 향상 가능 | - |
| 조기 권리화 | 국내 단계 절차 진행이 지연되어 등록까지 오랜 시간 소요 | - |
| PCT 가입 | - | 대만 등과 같이 PCT 가입국이 아닌 경우 일반해외출원만 가능 |

■ (특허) 일반 해외 출원 및 PCT 국제출원절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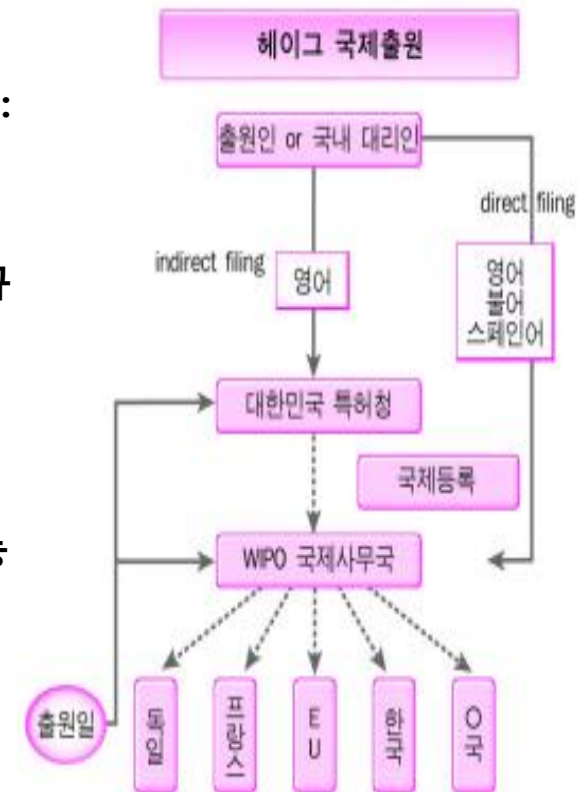
❖ (상표) 개별국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비교

- 개별 출원시, 보고대상국가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고, 각국가별로 심사와 등록이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 소요 ↑
- 마드리드 의정서 체계, 다국가 1출원 시스템: 1개의 언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택일: 한국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하는 경우 only 영어)
- 국제등록의 종속성: 국제등록 후 5년 간, 기초출원/등록에 종속
 - 1) 국제사무국, 방식심사 후 국제등록 → 각 지정국 관청에 통보
 - 2) 지정국 관청: 심사 진행 → 1년/1년 6개월 내에 통보 없으면 상표권 부여
 - 3) 국제등록: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국제사무국 납부에 따른 갱신



❖ (디자인) 개별국 및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비교

- (2019년 현재) 미국, 유럽, 일본은 헤이그출원 가능(중국 X)
- 다국가 1출원 시스템: 1개의 언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택일: 한국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하는 경우 only 영어)
- 해외 디자인 출원시 유의사항: 각 국가마다 보호되는 디자인 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 구별 중요
 - 중국: 부분디자인제도 불인정
 - 부동산, 인테리어, 2차원 이미지 자체, 화상디자인: 미국, 유럽 가능 (한국, 일본, 중국 불가)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12. 디자인 제도



| 구분 | 디자인권 |
|-----------|--|
| 보호대상 | 물품의 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 |
| 등록요건 |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등 |
| 권리발생 및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실시할 권리를 독점 •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이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 독점 • 디자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사범위까지 효력 범위 확장 |
| 보호기간 |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

음료수용 팩

상세정보 공개전문 검색등록사항 통합행정정보

서지정보 인명정보 창작의 요점내용 행정처리

▶ 도면일괄보기

[M01]



| | | |
|------------------|---------------------------|------|
| (21) 출원번호(일자) | 3020050034913(2005.10.17) | 크게보기 |
| (71) 출원인 | 서울우유협동조합 | |
| (11) 공개번호(일자) | (2006.06.28) | 전문다운 |
| (11) 공개번호(일자) | | |
| (11) 등록번호(일자) | 3004182270000(2006.06.21) | |
| (30) 우선권주장번호(일자) | | |
| 등록상태 | 등록 | |
| 최종처분(일자) | 등록결정(일반)(2006.03.23) | |
| 소급구분(일자) | | |
| 심판사항 | | |



이동통신기기

상세정보 공개전문 검색등록사항 통합행정정보

서지정보 인명정보 창작의 요점내용 행정처리

▶ 도면일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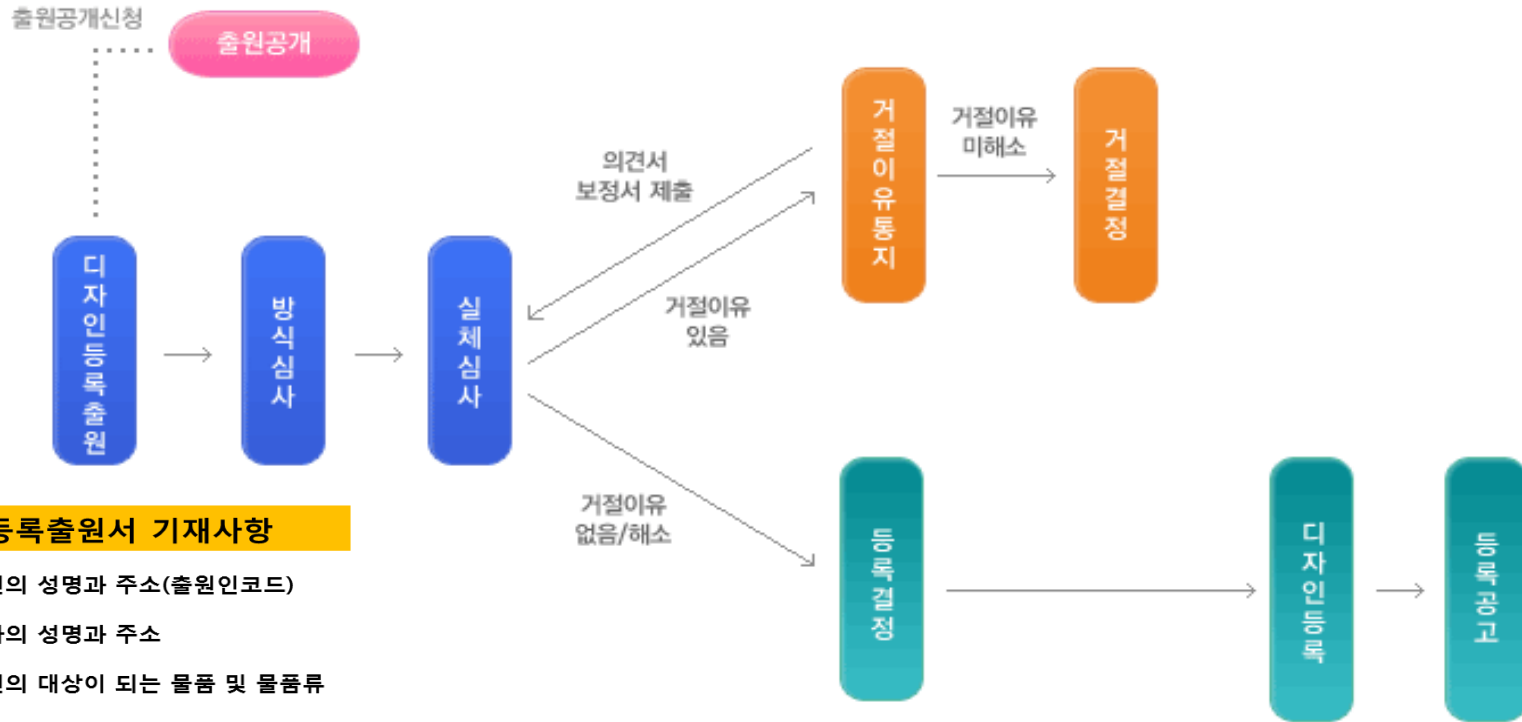
[M01]



| | | |
|------------------|---------------------------|------|
| (21) 출원번호(일자) | 3020070027964(2007.06.28) | 크게보기 |
| (71) 출원인 | 애플 인크. | |
| (11) 공개번호(일자) | (2007.11.16) | 전문다운 |
| (11) 공개번호(일자) | | |
| (11) 등록번호(일자) | 3020070001187(2007.07.10) | |
| (11) 등록번호(일자) | 3004695680000(2007.11.09) | |
| (30) 우선권주장번호(일자) | 29/270.887(2007.01.05)미국 | |
| 등록상태 | 등록 | |
| 최종처분(일자) | 등록결정(일반)(2007.09.28) | |
| 소급구분(일자) | | |
| 심판사항 | | |



❖ 디자인 출원부터 권리화까지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사항

- 1)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출원인코드)
- 2)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4) 단독디자인/관련디자인 여부, 부분디자인 여부

디자인 도면

-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 2) 디자인의 설명
- 3)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 4) 도면



❖ 디자인의 등록 요건

| 항목 | 부등록 요건 |
|-----------|--|
| 공업상 이용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도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 • 수공업적인 생산 포함; 상업적, 농업적 방법에 의한 것은 제외 • 같은 물품으로 보일 수 있는 수준의 동일성을 갖는 물품에 대한, 반복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 |
| 신규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전 공지되었거나 공연실시된 디자인 •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 상기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
| 창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지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의 경우 •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건조물 또는 유명한 경치 등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의 경우 • 2 이상의 주지디자인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의 경우 •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의한 용이창작의 경우 |
| 선출원주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최선 출원자만이 디자인등록가능 |
| 확대된 선원주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출원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당해 출원 후에 선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된 경우 후출원을 거절 가능 • 다만,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같은 경우에는 미적용 |



❖ 디자인의 등록 요건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인지 여부 판단 예제

포장한 상태의 내의(x), 찹쌀로 만든 떡(○), 입체상 홀로그램(x), 얼음으로 만든 장식물(○), 상품권(○), 향수(x), 판화를 인쇄한 달력(○), 독특한 방식에 의한 포장 형태(x), 도로의 입체교차로(x), 한증막(X) 품종을 개량한 장미꽃(x), 토지에 설치되는 송전탑(○), 형상이 연속하는 철사(○), 아이스캔디(○), 투명한 용기에 담아 그 전체적인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파악할 수 있게 한 칵테일 음료(x), 형상이 연속하는 털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되어 일정한 형상을 유지할 수 없는 아이스캔디(○), 입상물을 고형화한 고형사탕(○), 사각 형태로 접은 형상 및 모양의 와이셔츠(x), 이동화장실(○), 동물박제(x), 유리공예 작품(x), 냉장고 도어용 손잡이(○), 초콜릿 바(○), 투명한 용기에 담은 음료(x)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12. 디자인 제도

❖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 및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 유형

- 선출원디자인(A)와 동일/유사한 타인의 후출원디자인(A, A')은 선출원디자인(A)가 등록되거나 협의불성립에 의한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선출원주의를 적용**

| 유형 | 선출원디자인(A) | 후출원디자인(A, A') |
|----|-----------|---------------|
| 1 | 완성품 | 완성품 |
| 2 | 부품 | 부품 |
| 3 | 한 별 물품 | 한 별 물품 |
| 4 | 부분디자인 | 부분디자인 |

- 선출원디자인(a를 포함하는 A)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개, 협의불성립에 의한 공개 이전에 출원된 후출원디자인(a, a')는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적용**

| 유형 | 선출원 디자인(a를 포함하는 A) | 후출원 디자인(a, a') |
|----|--------------------|----------------|
| 1 | 완성품 | 부품 |
| 2 | 완성품 | 부분디자인 |
| 3 | 부품 | 부분디자인 |
| 4 | 한 별 물품 | 구성 물품 |
| 5 | 부분디자인 | 부분디자인 |



❖ 부분디자인 제도

- 물품 일부분의 형태를 표현한 디자인으로서, 부분디자인제도를 통해 제3자가 악의적인 물품의 특정부분만을 모방하여 디자인권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
- 부분디자인의 성립요건

| NO | 성립요건 |
|----|---|
| 1 | 물품의 부분일 것 (예를 들면, 모양이나 색채 이들의 결합만이거나 형상의 실루엣만이면 안됨) |
| 2 |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
| 3 |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이 아닐 것 |

- 출원시 부분디자인 취지 표시는 출원서에 부분디자인에 관한 출원임을 표시하고, 물품의 구분에 기재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기재
- 도면에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실선으로, 그 외 부분은 파선으로 명확히 구분한다. 그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경계선을 1점쇄선으로 도시
-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특정하는 방법과 1점 쇄선 등에 관한 설명을 기재
- **화상디자인: 디자인출원시 화상 디자인을 구성요소로서 간주하여 물품 명칭을 사용 가능**
(ex) 아이콘이 표시된 컴퓨터용 모니터)



❖ 부분디자인 제도: (참고) 화상디자인 사례

| | | | |
|--|------------------|-----------|-------------|
| | (19) 대한민국특허청(KR) | (45) 공고일자 | 2013년10월23일 |
| | (12) 등록디자인공보(S) | (11) 등록번호 | 30-0713375 |
| | | (24) 등록일자 | 2013년10월16일 |

| | |
|-----------|-----------------|
| (52) 분류 | H4-333S무심사등록 |
| (51) 국제분류 | 14-02, 14-03 |
| (21) 출원번호 | 30-2013-0030535 |
| (22) 출원일자 | 2013년06월13일 |

부분디자인(M01)

(73) 디자인권자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75 (문래동6가)

(72) 창작자

윤미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3동 499-42호 삼일아파트 402호

(74) 대리인

특허법인무한

다양한 서비스 - 지식재산

(54) 명칭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디자인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제 또는 합성수지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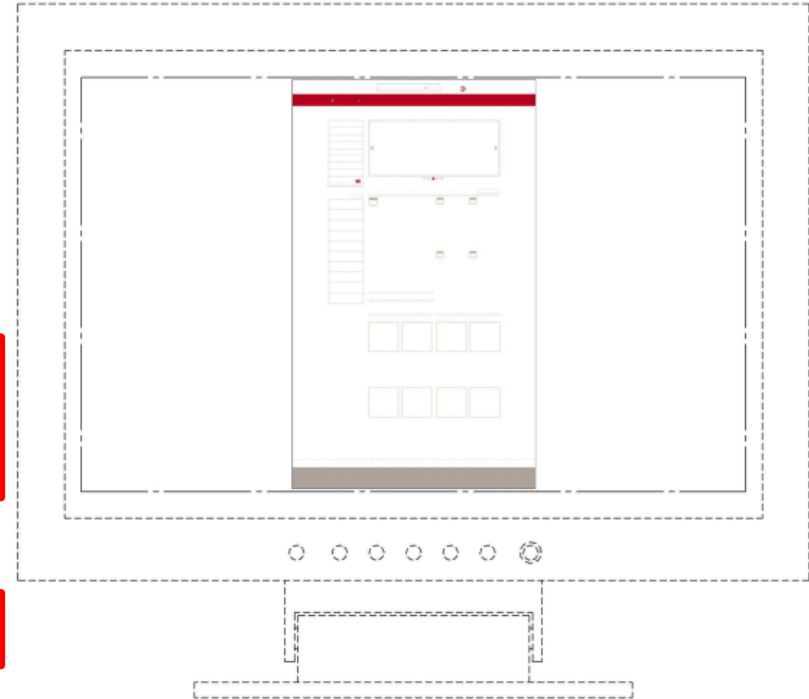
2. 본 디자인은 쇼핑물 홈페이지 화면 이미지에 관한 것으로,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3.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며, 정면도에 표현된 일점쇄선은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과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임.

4. 도면 1.1은 정면도이고, 참고도 1.1 및 참고도 1.2는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의 부분확대도이며, 참고도 1.3은 실제 적용된 상태의 요부를 확대한 참고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화상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은 디자인의 대상인 컴퓨터 모니터상에 표시되는 웹 사이트의 GUI(Graphical User Interface)로,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한 독창적인 도안을 한 것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부분디자인 제도: (참고) 가상디자인 사례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디자인공보(S)

(45) 공고일자 2014년07월31일

(11) 등록번호 30-0754741

(24) 등록일자 2014년07월24일

(52) 분류 H3-301S무심사등록, H5-40S

(51) 국제분류 14-04

(21) 출원번호 30-2013-0062232

(22) 출원일자 2013년12월09일

(73) 디자인권자

애플 인크.

미합중국, 95014 캘리포니아, 쿠파티노, 인피니트 루프 1

디자인도면 M0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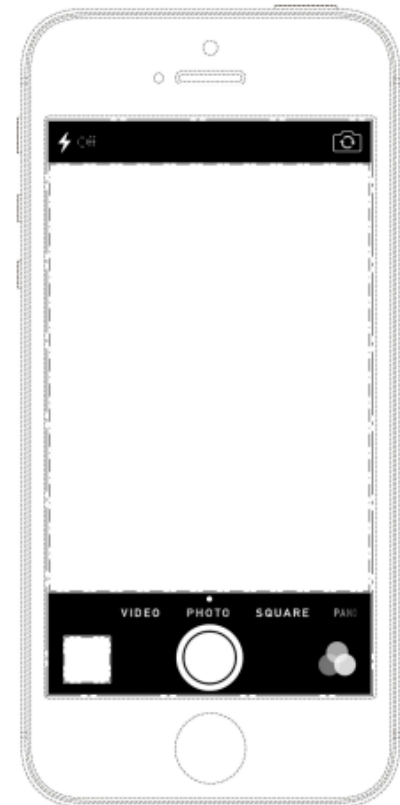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표시된 이동통신기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금속임.
2.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3. 1점 쇄선은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만을 나타내며, 1점 쇄선 자체는 등록받고자 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4. [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정면부분을 표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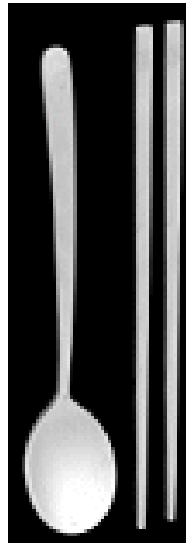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표시된 이동통신기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 한 벌 물품의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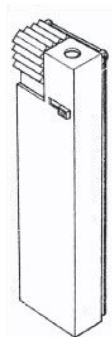
- 2 이상의 물품이 한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 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받을 수 있음
- 한 벌의 식연용구 세트, 한 벌의 커피세트, 한 벌의 오디오 세트, 한 벌의 응접 세트 등을 한 벌 물품으로 등록받을 수 있음
- 최근 한 벌의 면도용구 세트, 수영복 세트 등으로 한 벌 물품의 출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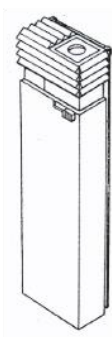
한벌 물품 디자인 등록 예시

❖ 관련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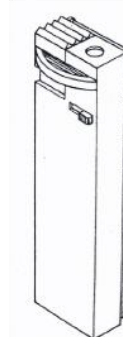
- 디자인은 물품의 외형에 관한 것으로, 그 모방 및 회피설계가 용이하여 회피 설계된 디자인의 출현을 방지하면서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 본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고 한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관련디자인 1, 관련디자인 2와 같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음



(기본디자인)



(관련디자인1)



(관련디자인2)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은 예

- 관련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에 합체되지만, 독자적으로 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며, 무효시 기본디자인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글자체 디자인

-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 디자인의 권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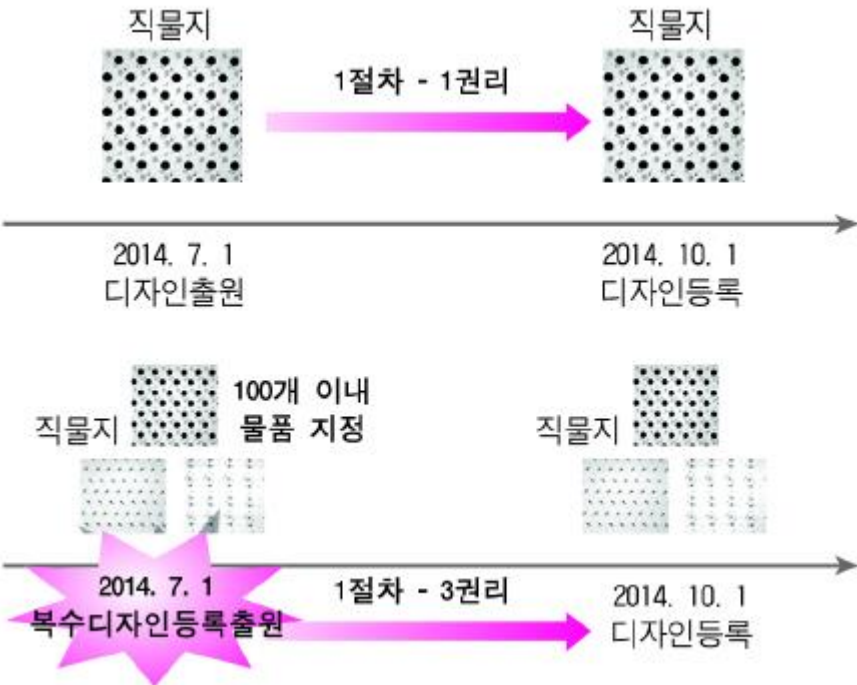
| 특허청 | 특허청 |
|---|---|
| 캘리그래피 [calligraphy] 필기체·필적, 서체(書體) | 타이포그래피 [typography] 폰트 |
| 손으로 그린 그림문자 유연하고 동적인 선, 글자 자체의 독특한 번짐, 살짝 스쳐가는 효과, 여백의 균형미 등 순수 조형의 관점에서 표현된 것 | ① 활자를 사용해서 조판하는 일, ② 조판을 위한 식자의 배치, ③ 활판인쇄, ④ 인쇄된 것의 체재 |
| 한 글자, 또는 한 문장 | 한 벌의 글자꼴 |
| 상호, 제호, 상품 네이밍 | 인쇄물, 웹 페이지 |
| 저작권 OK | 디자인보호법 OK |

- 판례는 서체에 대한 디자인의 창작성은 부정 (단, 서체파일은 "서체 디지털화 과정에서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과 창의적 개성이 포함"된다고 하여 저작물성을 인정)(대법원판결 98도 732)
- 단,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한 벌의 글자꼴은 보호 가능
-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거나 그로 인한 결과물인 경우 글자체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12. 디자인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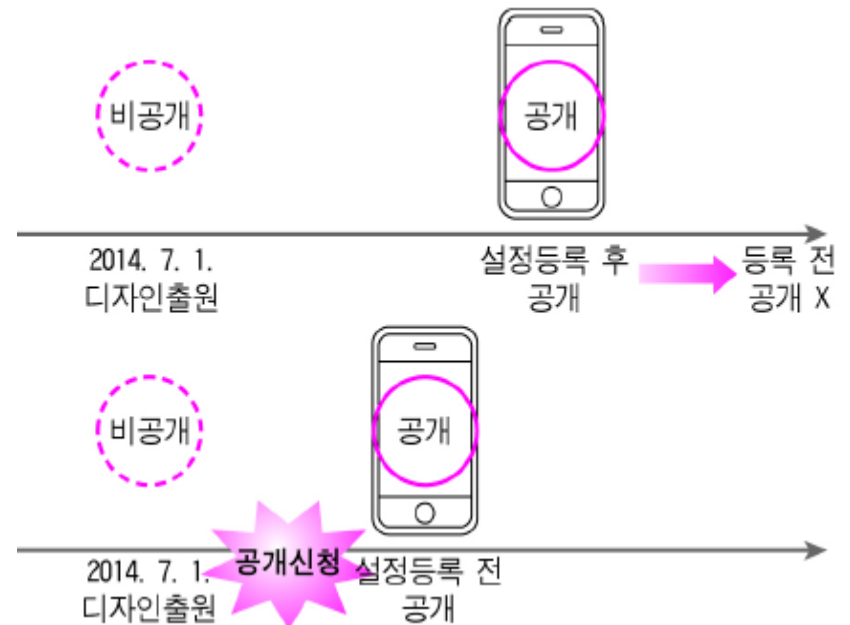
❖ 복수디자인등록출원

- 디자인보호법은 하나의 디자인등록절차를 통해 하나의 디자인권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40조 제1항)
- 동일한 물품류 구분에 속하는 물품의 경우 100개 이내에서 복수디자인등록출원 가능(제41조)



❖ 출원공개신청

- 디자인보호법은 등록 전까지 출원된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지만,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등록 전이라도 공개
- 보상금청구권 행사를 위한 서면경고시, 출원공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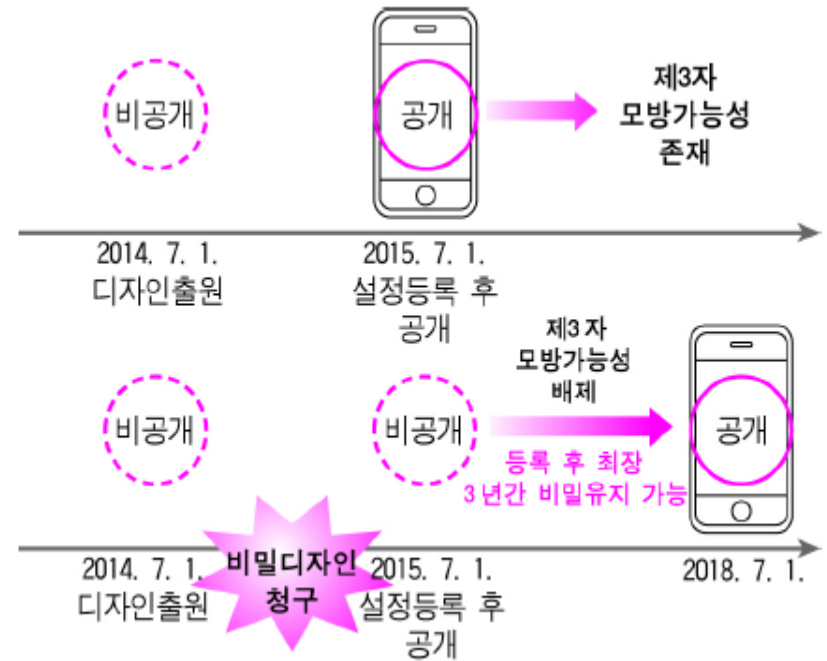
❖ 신규성 상실의 예외

- 자기 디자인이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 출원을 진행하면, 그 공개는 없는 것으로 간주
-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않아도 또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12개월 이내 출원하면, 추후 주장 및 입증 가능



❖ 비밀디자인제도

- 설정등록 후 일정 기간(최장 3년) 동안 등록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음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민사,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형태 | 물품 | 동일물품 | 유사물품 | 비유사물품 |
|---------------------|----|-------|-------|--------|
| 형상. 모양. 색채 (동일) | | 동일디자인 | | |
| 형상. 모양. 색채 (유사) | | | 유사디자인 | |
| 형상. 모양. 색채 (비유사) | | | | 비유사디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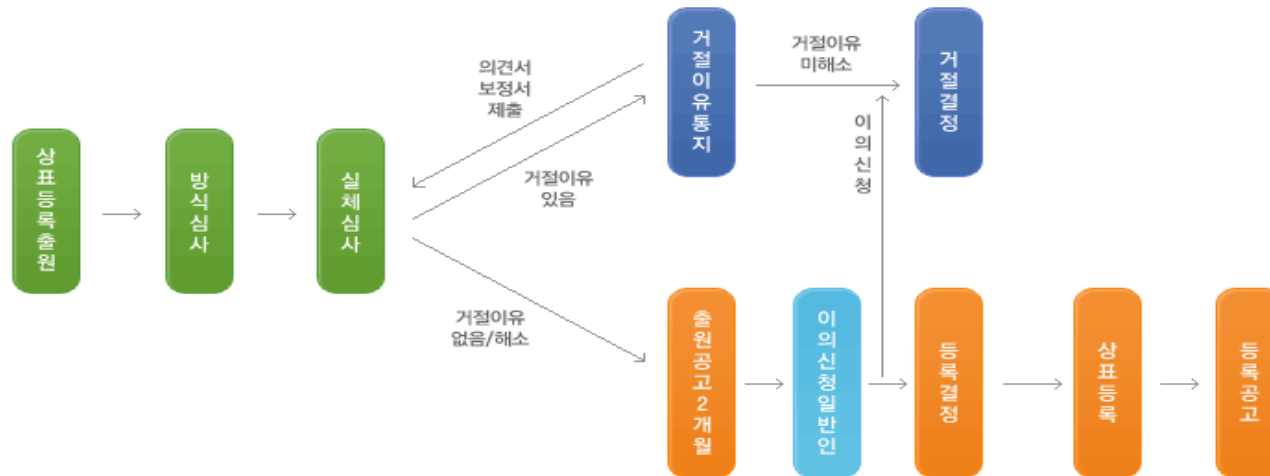


| NO | 항목 | 내용 | |
|----|--------------------|---|--|
| 1 | 주체적 기준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 | |
| 2 | 전체적, 종합적 관찰 | 「관찰」이란 육안 관찰을 의미 | |
| | | 「전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디자인의 요부 판단과 그 비교만으로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전체 대 전체로서 대비 관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
| 3 | 객체적 기준 | 형상 또는 모양이 다른 경우 | 원칙적으로 비유사로 판단 |
| | | 모양의 유사판단 | 주제(Motif)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 | | 색채가 다른 경우 | 색채가 모양을 이루지 않는 한 유사로 판단함 |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13. 상표 제도



| 구분 | 상표권 |
|-----------|---|
| 보호대상 |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
| 등록요건 | 자타상품식별력이 있을 것 상표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권리발생 및 내용 |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실시할 권리를 독점 |
| 보호기간 |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년씩 갱신 가능)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표권자는 자기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



상표의 본원적 기능

1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 상표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능
-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

2 출처표시 기능

-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동일한 출처(origin)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능

3 품질보증 기능

-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
- 소비자는 그 상품이 갖는 품질과 명성에 관심이 있으므로, 품질보증 기능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가짐.

상표의 파생적 기능

1 광고 선전 기능

- 상표가 상품 내지 이미지와 함께 수요자에게 기억되면, 수요자는 상표를 접할 때마다 상품과 상품이미지를 연상하게 됨.
- 상표는 상품의 판매촉진 수단으로 기능함. 상표는 상표는 말없는 판매원(silent salesman)

2 재산적 기능

- 상표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신용이 화체되고 고객흡인력이 형성되면, 가치 있는 경쟁수단이 됨
- 상표 그 자체로 독립적 재산권으로 인정됨.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13. 상표 제도

❖ 상표출원서 기재사항

- 1) 권리 구분(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증명표장/업무표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 2) 출원인의 성명과 출원인코드
- 3) 상품/서비스업류(상품 분류: 제1류~제45류)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 업무
- 4) 상표 유형(일반상표, 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
- 5) 상표건본(시각적 인식할 수 있는 상표의 경우 그림)

| | |
|------------------|--|
| (51)상품분류 | 25분류(9판) |
| (20)출원번호(일자) | 4020110064331(2011.11.16) |
| (73)출원인 | 주식회사 에스.엔.엔터테인먼트 |
| (111)등록번호(일자) | 4009440990000(2012.12.10) |
| (260)출원공고번호(일자) | 4020120061452(2012.09.13) 전문다운 |
| (112)등록공고번호(일자) | |
| (641)원출원번호(일자) | |
| (300)우선권주장번호(일자) | |
| 관련출원번호 | |
| 법적상태 | 등록 |
| 심사진행상태(일자) | 등록결정(일반)(2012.11.28) |
| 소급구분(일자) | (2011.11.16) |
| 심판사항 | |
| 구분 | 국내상표, 영문상표, 일반상표 |
| 기술이전 희망 | |
| 이의신청 일자 | |
| 이의신청 상태 | |
| 이의신청 대상 | |



| | |
|------------------|---------------------------|
| (51)상품분류 | 43분류(11판) |
| (20)출원번호(일자) | 4020180004838(2018.01.11) |
| (73)출원인 | (주)제이티비씨 |
| (111)등록번호(일자) | |
| (260)출원공고번호(일자) | |
| (112)등록공고번호(일자) | |
| (641)원출원번호(일자) | |
| (300)우선권주장번호(일자) | |
| 관련출원번호 | |
| 법적상태 | 출원 |
| 심사진행상태(일자) | |
| 소급구분(일자) | (2018.01.11) |
| 심판사항 | |
| 구분 | 국내상표, 도형복합, 일반상표 |
| 기술이전 희망 | |
| 이의신청 일자 | |
| 이의신청 상태 | |
| 이의신청 대상 | |





(1) 식별력이 있을 것

-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키는 것
- 일반적으로 식별력의 유무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

(1) 상품의 보통명칭

- 특정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

(2) 관용표장

- 원래, 특정인의 상표였으나 그 상품을 취급하는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 상품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결과, 식별력을 상실한 표장

(3) 기술적 표장 (descriptive mark)

-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 금강산, 뉴욕 등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
-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 가능

(5) 흔한 성 또는 명칭

(6) 간단하고 흔한 표장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1) 식별력이 있을 것

-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키는 것
 - 일반적으로 식별력의 유무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
 - **그러나!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음**
-
- 출원상표가 원래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는 상표라 하더라도 특정인이 오랫동안 자기의 상품 표지로 사용하여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거래상의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면, 상표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을 인정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된 사례>





(2)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
|----|---|
| 1 |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결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무궁화 도형, IMF, WTO 등) |
| 2 |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양키, Negro 등) |
| 3 |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KBS, 적십자 등) |
| 4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
| 5 |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
| 6 |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 |
| 7 | 타인의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 8 | <i>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i> |
| 9 |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 10 |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2)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
|----|---|
| 11 |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 12 | 국내 또는 외국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 13 | 국내 또는 외국에서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 14 |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
| 15 |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
| 16 | 「종자산업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
| 17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 18 |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 19 |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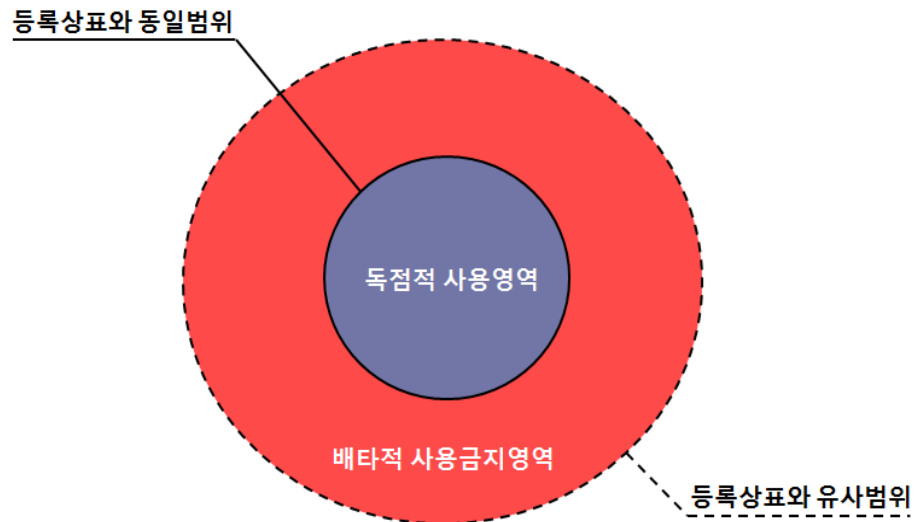


- **상표권의 존속기간**

- 상표권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 10년마다 갱신등록이 가능하므로 반영구적 소유가 가능

- **상표권의 보호범위**

-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에 대해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
- 그러나! 제3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업으로서 사용하는 경우 민사,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상표의 유사

- 상표의 경우 시각적인 요소가 강하고 모방이 다소 용이하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상품 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유사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음

상표의 유사판단 방법

- 상표의 유사라 함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나 외관, 호칭, 관념이 비슷해서 동일 유사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통념상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의미함

상품의 유사

- 상품의 유사란 대비되는 두 상품이 동일한 정도는 아니지만 거래사회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비슷한 것을 말한다.



1. 상표를 부정 사용하면 상표등록이 취소된다.

- ANSONY라는 상표를 등록받고 실제로는 an SONY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

2.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으로 취소된다.

-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 한글과 영문자의 결합상표에 있어서 어느 하나만 사용한 경우
- 등록상표에 식별력 있는 도형을 부기하여 사용한 경우
- 다만,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가 사용한 경우에는 취소를 면할 수 있음.

3. 상표권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상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식별력이 큰 상표를 선택
- 경쟁업자의 무단사용에 대한 철저한 권리행사
- 서체, 색채를 통일화하여 Brand Identity를 유지하고, 등록상표(®)임을 표시



1 저작물의 개념

가.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 창작성이 있는 것

- 창작성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는 정도이면 충분함
- 전문 작가의 작품이건 초등학생의 작품이건 모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나. 저작물은 표현된 것

-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님
-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됨
- 요리책 속에 쓰여진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

2 보호되는 저작물

가. 저작권법상 예시된 저작물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나.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다. 편집저작물

-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



원작만화 식객



드라마 식객(2차적 저작물)



영화 식객(2차적 저작물)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14. 저작권 제도



| 범 주 | 특성 | 종 류 |
|--------------|---|--|
| 어문저작물 | 문자 또는 구술로 표현되는 저작물 | - 문자 : 소설, 수필, 매뉴얼, 시, 시조, 논문텍스트, 각본 등 - 구술 : 강연, 연설, 설교, 만담, 낭송 등 |
| 음악저작물 | 소리(音)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 가요, 가곡, 성악, 민요, 창극, 기악, 관현악, 오페라, 뮤지컬, 작사(가사), 작곡, 편곡, 즉흥연주곡 등 |
| 연극저작물 | 사람의 말과 몸짓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 연극 대본, 연극, 무용·무용극, 무언극, 창극, 오페라, 뮤지컬 등 |
| 미술저작물 | 시각적 미를 형상이나 색채에 의해서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저작물 | 회화, 서예, 디자인, 조소 조각 판화공예, 캐릭터, 응용미술작품 등 |
| 건축저작물 | 건축과 관련된 저작물 | 건축물, 건축모형, 설계도서 |
| 사진저작물 | 인물이나 풍경 그 밖의 형상을 사진기 등의 기계적 장비에 의하여 필름이나 인화지 또는 직물 등에 평면적으로 표현한 저작물 | 초상사진, 광고사진, 기록사진, 예술사진, 보도사진, 슬라이드·필름 등 |
| 영상저작물 |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연속적 영상으로 표현된 저작물 | 영화·기록영화, 드라마·오락프로그램·기타 방송프로그램, 뮤직비디오, 게임(화상이 나오는 것), CF, 애니메이션 |
| 도형저작물 | 어떤 형태나 모양을 표현하는 저작물 | - 평면적 도형 : 지도·도면·도표·설계도·약도·해도(海圖)·통계그래프분석표·시력표 등 -- 입체적 도형 : 지구의(地球儀)·인체모형·동물모형 등 |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되는 창작물 |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게임(컴퓨터 작동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



3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 | |
|---|---|
| 1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 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3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 4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 5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4 저작권의 형태에 따른 보호기간

| 구분 | 내용 | |
|-------|---|--|
| 저작인격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자의 생존기간 •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 |
| 저작재산권 | 원칙 |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사망 후 70년간 |
| | 공동저작물 |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 |
| | 무명·이명저작물 |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
| | 업무상저작물 | |
| | 영상저작물 | |
| | 프로그램저작물 | |
| | | |



4.1 저작인격권

가. 저작인격권이란

-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로, 일신전속적 권리(양도불가)

| | |
|---------|--|
| 공표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짐◆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 |
| 성명표시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짐 |
| 동일성 유지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 |

나.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 불가
-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음



4.2 저작재산권

| | |
|------------------------|---|
| 복제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란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함 • 기존의 책 등의 형태로 나온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함 •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함 |
| 공연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짐 •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함 |
| 공중송신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을 전부 포괄하는 개념 |
| 전시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짐 |
| 배포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함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짐 |
| 대여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짐 |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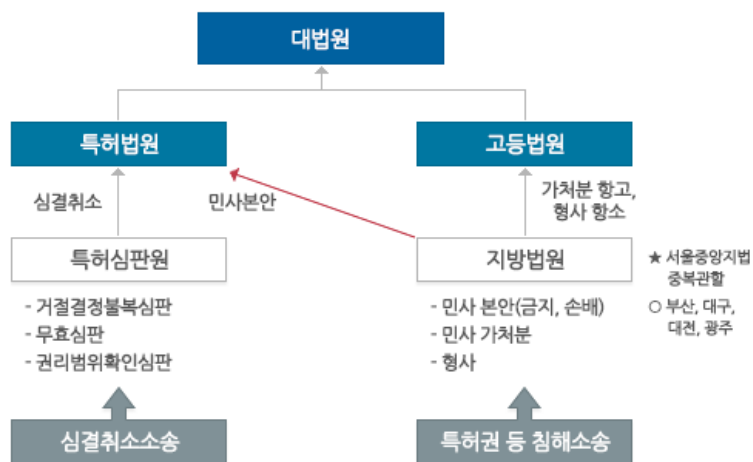
5 저작권의 제한

| 사유 | 복제 | 배포 | 공연 | 공중 송신 | 전송 | 방송 | 전시 |
|----------------------------------|----|----|----|----------|----|----|----|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 | ○ | | | | | | |
|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 ○ | ○ | | ○ | ○ | | |
|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제25조) | | | | | | | |
| 교육기관 · 교육지원기관 | ○ | ○ | | ○ | ○ | | |
| 교육을 받는 자 | ○ | | | | ○ | | |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 ○ | ○ | ○ | ○ | | | |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 ○ | ○ | | | | | ○ |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 방송(제29조) | | | ○ | | | ○ | |
|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재생 | | | ○ | | | | |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 ○ | | | | | | |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31조) | | | | | | | |
| 조사 ·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 | ○ | | | | | | |
|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 | | | | |
|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보존용으로 제공 | ○ | | | | | | |
|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서관 안에서 열람 | ○ | | | | ○ | | |
|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도서관 안에서 열람 | ○ | | | | ○ | | |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 ○ | ○ | | | | | |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 | | | | | | | |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 ○ | ○ | | | | | |
|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 | ○ | ○ | | | ○ | | |
|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의2) | | | | | | | |
| 공표된 저작물의 수화 변환 | ○ | ○ | ○ | ○ | | | |
|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 | ○ | ○ | ○ | ○ | | | |
|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 | | | | | | |
|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 | | | | | | | ○ |
|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 | ○ | | | | | | |
|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 ○ | ○ | | | | | |
|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제35조의2) | ○ | | | | | | |

판단기준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Part 1. 지식재산 제도: Theme 15.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및 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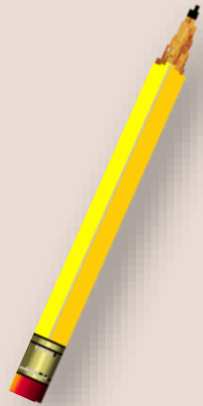
산업재산권법의 심판분류

| | 구분 | 특허법/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
|------|--------------|---------------|--------|-----|
| 결정계 | 거절결정불복심판 | ○ | ○ | ○ |
| | 정정심판 | ○ | × | × |
| | 보정각하불복심판 | × | ○ | ○ |
| | 취소결정불복심판 | × | ○ | × |
| 당사자계 | 취소심판 | × | × | ○ |
| |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 | ○ | ○ | ○ |
| | 연장등록무효심판 | ○ | × | × |
| | 정정무효심판 | ○ | × | × |
| | 갱신등록무효심판 | × | × | ○ |
| | 전환등록무효심판 | × | × | ○ |
| | 지정상품추가등록무효심판 | × | × | ○ |
| | 권리범위확인심판 | ○ | ○ | ○ |
|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 | ○ | × |

Part 2. 지식재산 창출: Theme 1. 아이디어 도출과 발명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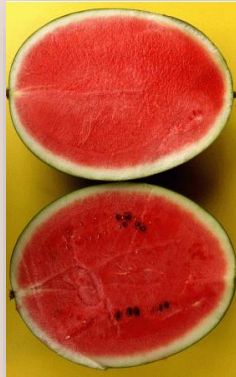
❖ 일반적 발명 기법

더하기 기법



- 지우개 달린 연필
- 망원경
- 스팀 청소기

빼기 기법



- 씨없는 수박
- 무가당 주스
- 디지털 카메라
- 3간 회전문
- 무선 전화기

구멍 뚫기



- 우표 절취선에 작은 구멍
- 주전자 뚜껑

크기바꾸기



- 3단접이 우산
- 미니 가습기
- OLED TV

모양 바꾸기



- 립스틱모양볼펜
- 펜 모양 보이스레 코더

재료바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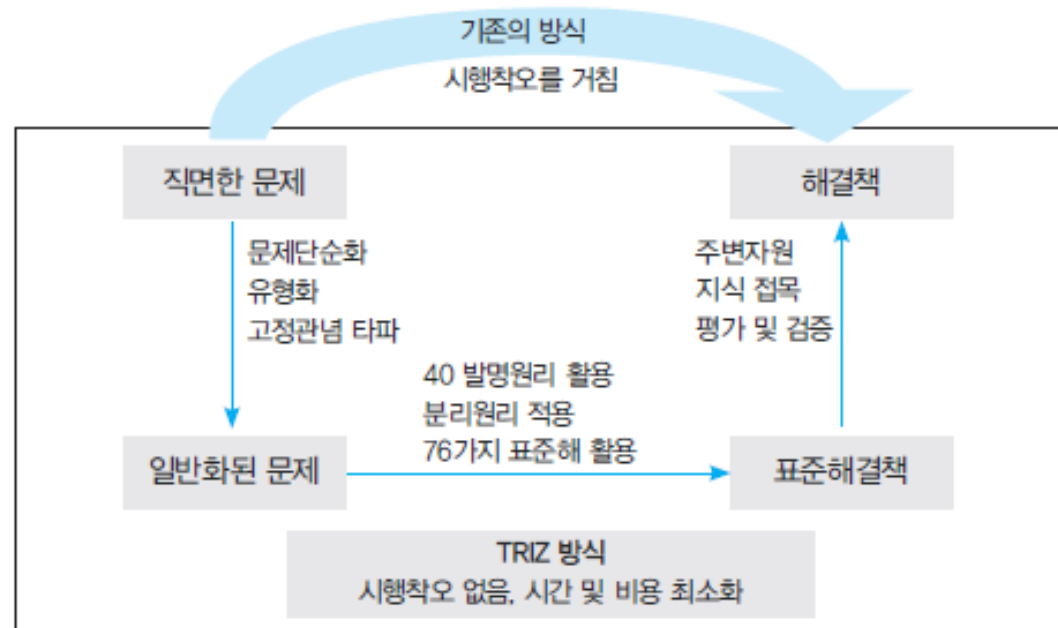


- 종이컵
- 콩으로 만든 마요네즈

Part 2. 지식재산 창출: Theme 1. 아이디어 도출과 발명 기법

❖ 트리즈 기법과 발명

-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정의하고, 그 결과를 얻는 데 관건이 되는 모순을 찾아내어 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안을 얻도록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
- 겐리히 알츠슐러가 1940년대에 구 소련 해군에서 특허를 심사하는 업무를 할 당시 군관련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명에는 어떤 공통의 법칙과 패턴이 있음을 알게 됨
- 전세계 특허 150만건 중에서 창의적인 특허 4만건을 추출 분석한 결과, 4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
 - 발명문제의 정의
 - 발명의 수준
 - 발명의 유형
 - 기술 시스템 진화의 유형





❖ 직무발명의 요건

종업원의 발명일 것

- **종업원** : 고용계약에 의해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을 지칭. 상근 비상근을 묻지 않으며 촉탁직원이나 임시직원도 포함하나 고용관계는 반드시 있어야 함
- **직무** : 사용자의 요구에 응해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직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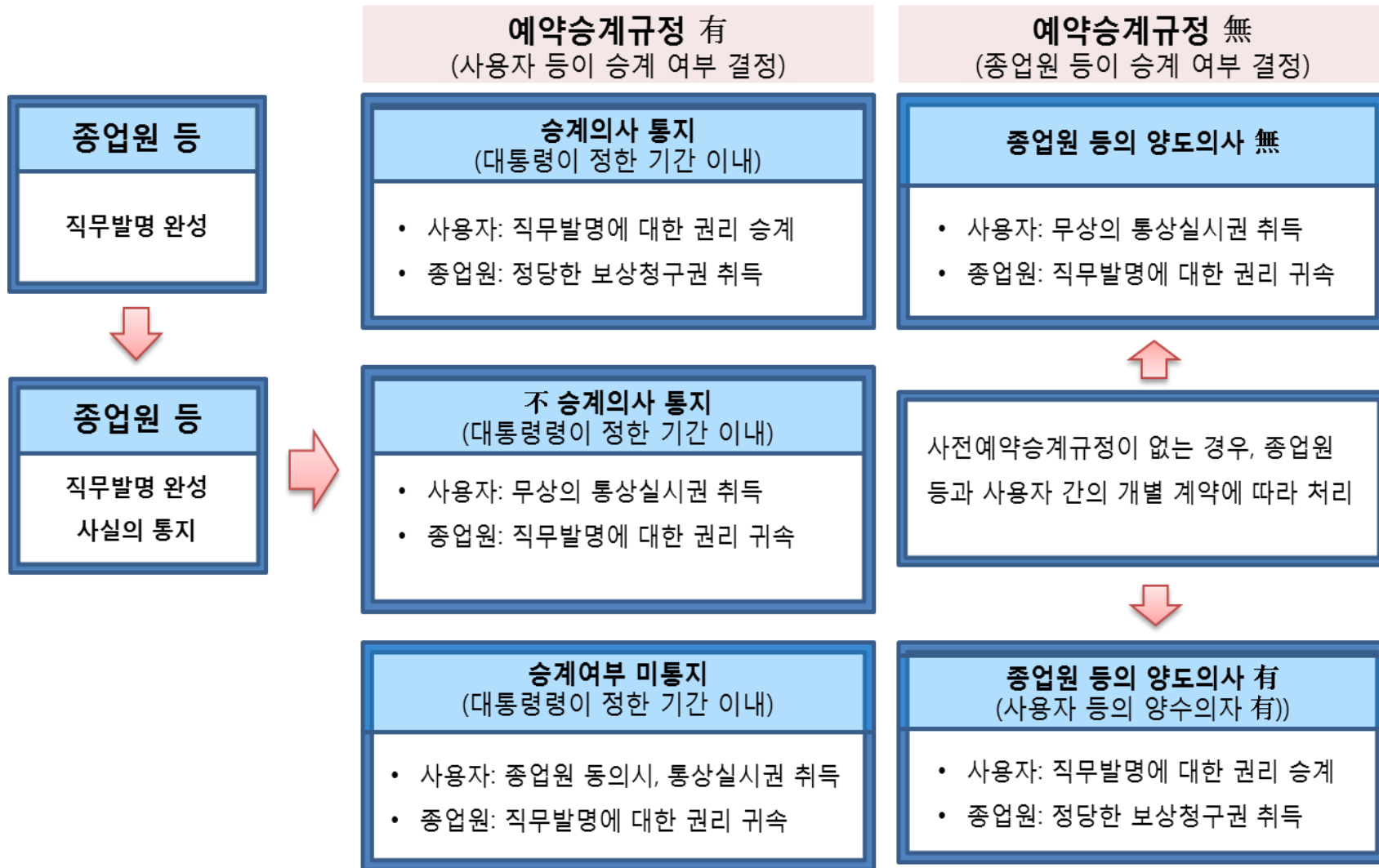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 **사용자** : 타인을 고용하는 개인,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지칭
- **업무범위** : 사용자가 수행하는 사업범위
- 법인의 경우 사업범위는 정관을 기초로 해석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 **종업원의 직무** : 발명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발명의 성립은 인정되나 발명을 하는 것이 종업원의 직무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발명이 아님
-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 종업원의 직무는 현재의 직무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내에서 과거에 수행한 직무도 포함

❖ 직무발명의 법적 취급





❖ 직무발명의 법적 취급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귀속

발명자주의에 의해,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귀속되고, 사용자는 이를 양도받을 수 있음

보상을 받을 권리

사용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준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

발명자 게재권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시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게재될 권리를 가짐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비밀유지의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이나 종업원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제3자가 특허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대가 없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하여 그 직무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음

예약승계권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가 그 권리를 승계하기로 하거나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인 예약승계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해 예약승계될 수 있음

승계 여부 통지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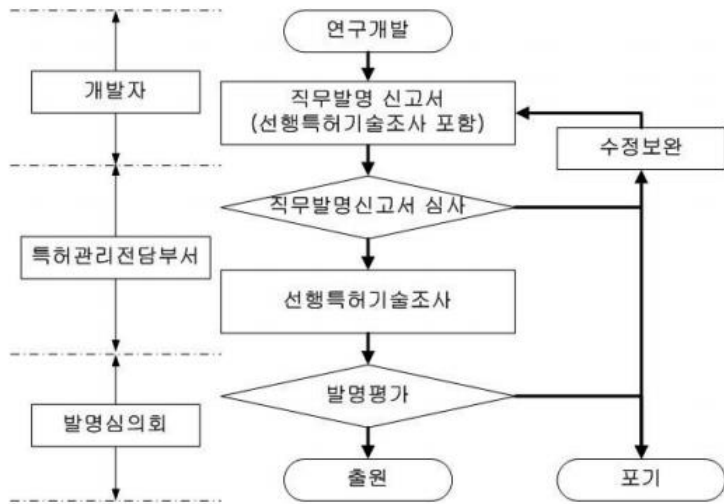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일정 기간(예, 4개월) 내에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를 문서로 통지해야 함

정당한 보상에 대한 의무

- 예약승계에 의해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해야 함
- 정당한 보상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후 특허 출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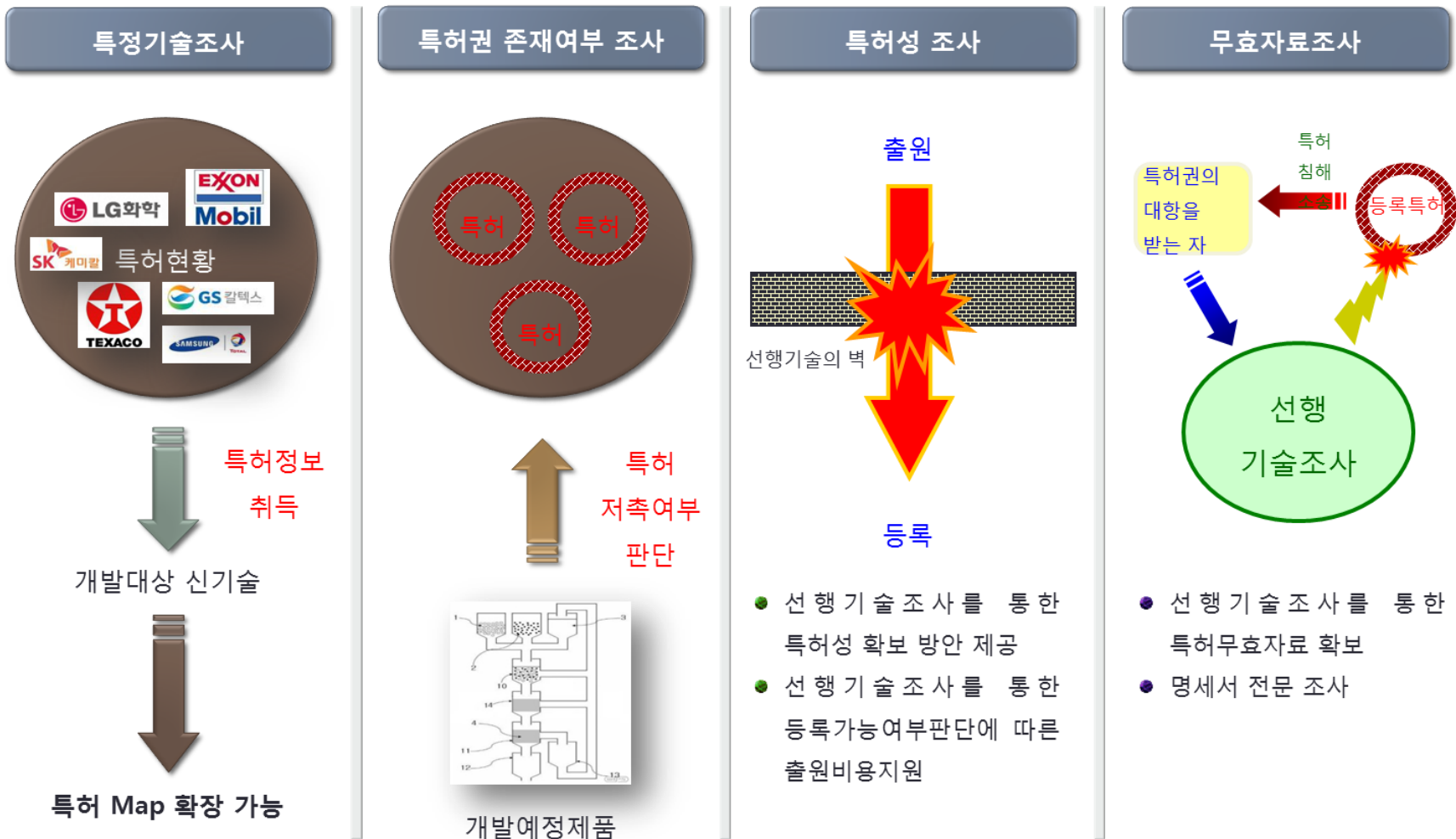


❖ 직무발명의 평가 절차 및 평가 결과지표(예시)



| 구분 | 심사항목 | 심사내용 |
|-------------|-----------|---|
| 특허성 (30) | R&D 부합성 | 세계적 기술 R&D 추이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 발명인지에 대해서 평가 |
| | 발명의 구성 | 종래기술과 비교할 때 개량의 정도 또는 문제해결 정도가 어느 수준 인지에 대해 평가 |
| | 권리 침해 가능성 | 관련 선등록 특허 대비 발명기술의 침해여부 및 침해 가능성의 정도에 대해서 평가 |
| 기술성 (40) | 적용범위 | 발명의 적용범위에 대한 것으로 발명이 적용될 수 제품 및 시장을 파악하여 기술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평가함. |
| | 경쟁성 | 종래기술에 비해 기술적인 장점(현저한 이점) 또는 실질적인 경쟁상의 이점이 있는 가를 평가 |
| | 증명용이성 | 발명의 이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고 그 이점을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는 가에 대해 평가 |
| | 기술수명 | 기술발전 속도와 수명주기를 고려할 때 발명기술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평가 |
| 시장성 (30) | 수요성 | 기술제품 시장에서 발명 기술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는 지 또는 기술수요가 파악되어 있는 지를 평가 |
| | 잠재성장성 | 발명기술이 적용 가능한 틈새시장의 존재 여부 및 잠재적 성장성에 대해서 평가 |
| | 상용화 가능시기 | 발명기술을 실제 사업에 적용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평가 |

1 특허 정보 검색 및 분석



1 특허 정보 검색 및 분석

한국

- 한국특허정보원(Kipris: 무료) www.kipris.or.kr, www.designmap.or.kr.
- 민간 운영(유료): www.wipson.com, www.wintellips.com, www.wisdomain.com, www.keywert.com

미국

- 미국특허청(USPTO) www.uspto.gov (무료)
- Google Scholar 검색 scholar.google.com (무료)

유럽

- 유럽특허청(EPO) <http://worldwide.espacenet.com> (무료)

일본

- 일본 특허청(JPO) <http://www.ip01.inpit.go.jp> (무료)

중국

- 중국지식재산권국(CIPO) <http://www.sipo.gov.cn> (무료)

PCT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http://www.wipo.int/pctdb/en/> (무료)
- Google Scholar 검색 scholar.google.com (무료)

2 특허맵(특허분석) 전체 Process

| 단계 | 작성항목 | 설명 |
|----|--|---|
| 1 | 테마 선정 및 기술분류표 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맵 작성 대상 기술을 세분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 가능 |
| 2 | 검색식 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분류별 키워드를 선정한 후 이를 기초로 검색식을 작성 |
| 3 | 데이터 추출 및 노이즈 제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색식을 이용해 특허검색DB로부터 데이터를 추출 데이터의 내용을 파악하여 관련건만 추출하도록 노이즈 제거를 실시 |
| 4 | 데이터 가공 (출원인명, 국적, 주체, 번호체계 등 통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량분석을 위한 예비적인 데이터 가공 작업 각국별로 출원인명이 다르므로 이를 통일화하는 작업이 필요(출원인대표명화) 동일한 출원인이 영문 및 한글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이를 통일화 |
| 5 | 정량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데이터 항목을 추출하여 테이블로 만든 후 도식화 출원년도, 출원인, 출원국, 기술분류 등의 필드를 주로 사용하여 그래프를 작성하고 이를 설명 테이블 작성은 액세스 또는 엑셀을 사용 가능하며, 그래프 작성은 엑셀을 사용 가능 |
| 6 | 정성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출원인/발명자 또는 특정 기술에 대한 기술발전도 작성 특정 기술에 대한 공백기술 분석 출원인별로 출원내용을 분류한 후 이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작성 향후에 특허침해이 있는 특허들을 분석하여 회피설계방향을 제시 주요특허에 대한 내용을 정리 |

2.1 기술정보적 특허맵(특허분석) 목적 및 유형

| 분석 목적 | 주요분석유형 | | 활용방안 |
|----------|--------|--|--|
| 기술개발 동향 | 기술분포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기술별 시계열적 추이 출원인별 기술별 점유율 현황 특허 기술 로드맵 출원인별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및 특허 동향 파악 기술개발 방향설정 향후실현기술 예측 특허 포지션 비교 |
| | 템페스트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별 특성별 분포 특정기술의 세부기술별 구성 | |
| 핵심 기술 파악 | 기술발전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별 핵심특허 전개도 해결과제(Object)-해결수단(Solution) 시계열적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흐름 파악 연구테마 선정 핵심 특허기술 파악 |
| | 요지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지리스트 주요 특허 요약서 구성부위 특허맵 | |
| 틈새기술 파악 | 매트릭스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결과제(Object)-해결수단(Solution) 매트릭스 Product-Patent 매트릭스 기술분류별 점유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테마 선정 특허 포트폴리오 강화 |
| 유망기술 파악 | 기술상관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특허분류 상관맵 키워드-키워드 상관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입특허 발굴 기술개발 방향 설정 |
| 기술파급 효과 | 기술상관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용관계 분석 자기인용-타사인용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개발 방향 설정 연구테마 선정 |

2.2 권리정보적 특허맵(특허분석) 목적 및 유형

| 분석 목적 | 주요분석유형 | 활용방안 |
|---------------------|--|--|
| 문제특허 발굴, 권리범위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요소별, 제품별 권리관계맵 대응특허(패밀리특허)맵 청구항별 요지맵 권리범위 분석시트 작성 Claim Tree 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사 및 타사 특허권 권리범위 확인 문제특허 발굴을 통한 회피설계, 대체 기술 확보 라이선싱 매입전략 카운터 클레임 확보안 |
| 침해가능성 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응특허(패밀리특허) 맵 청구항별 요지맵 권리기간맵 Claim Chart 작성 및 분석 비침해화 및 무효화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피설계안 마련 비침해화, 무효화 전략 라이선싱 전략 매입 전략 카운터 클레임 확보안 |
| 특허망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 부위맵 인용관계 및 관련 특허 분석(분할, 계속출원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사 특허망 확인 자사 특허망 확인 및 포트폴리오 구축 |
| 권리상태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리관계맵 권리기간맵 심사관계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리상태 확인 로열티 산정 협력기업 확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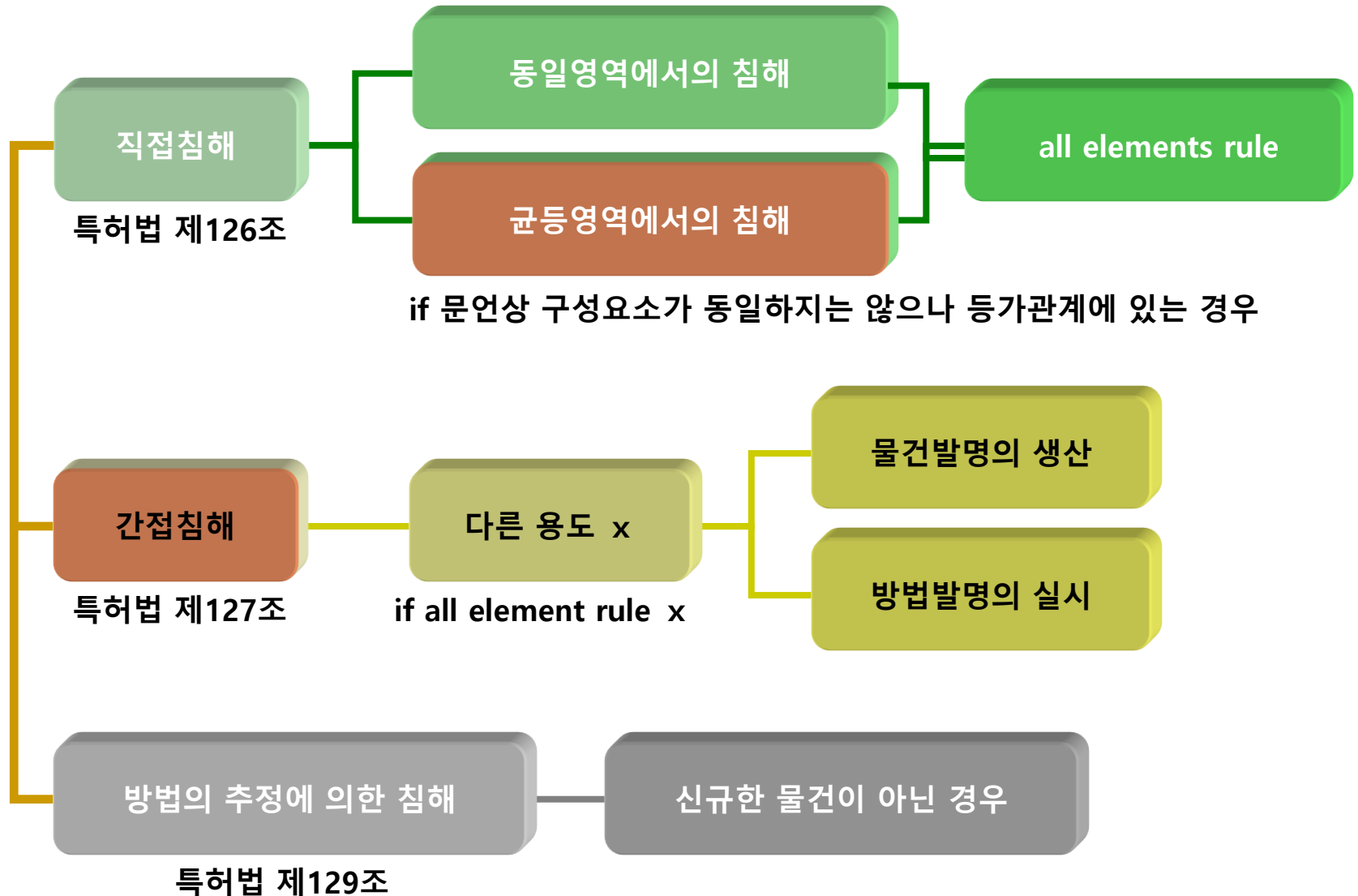
2.3 경영정보적 특허맵(특허분석) 목적 및 유형

| 분석 목적 | 주요분석유형 | | 활용방안 |
|----------------------|----------------|--|--|
| 기술, 상품 개발동향 파악 | 출원 건수 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별 특허출원 동향 기술별 시계열적 추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전략 수립 연구개발 전략 수립 |
| | 출원인 분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원인별 기술별 특허점유율 출원인별 기술별 출원의 변화 | |
| 연구개발 동향 파악 | 출원인 분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원인별 출원 및 등록 건수 비율 경쟁사의 시계열적 기술별 비율 변화 경쟁사의 시계열적 키워드 빈도수 추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사 연구개발 방향 연구개발 조직 분석 중장기 프로젝트 수행 여부 파악 핵심 발명자 확보 방안 특허관리 방향 설정 기업협력, 인수합병 |
| | 발명자 분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출원인별 발명자 수 비교 발명자 군집 분석 | |
| | 기업간 상관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회사의 연도별 협력관계도 기술협력 기업별 기술 분야 분석 | |
| 시장 참여 현황 | 뉴엔트리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별 사업 참여 및 탈퇴 시기 추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협력, 인수합병 |
| 사업 전략 수립 (유망기술발굴) | 기술분포맵 인용관계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duct Market Matrix 선도기업, 창의적 기업 출원 현황 분석 동시 출원 단어, 동시 인용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 규모 파악, 예측 연구테마 발굴 미래 유망기술 개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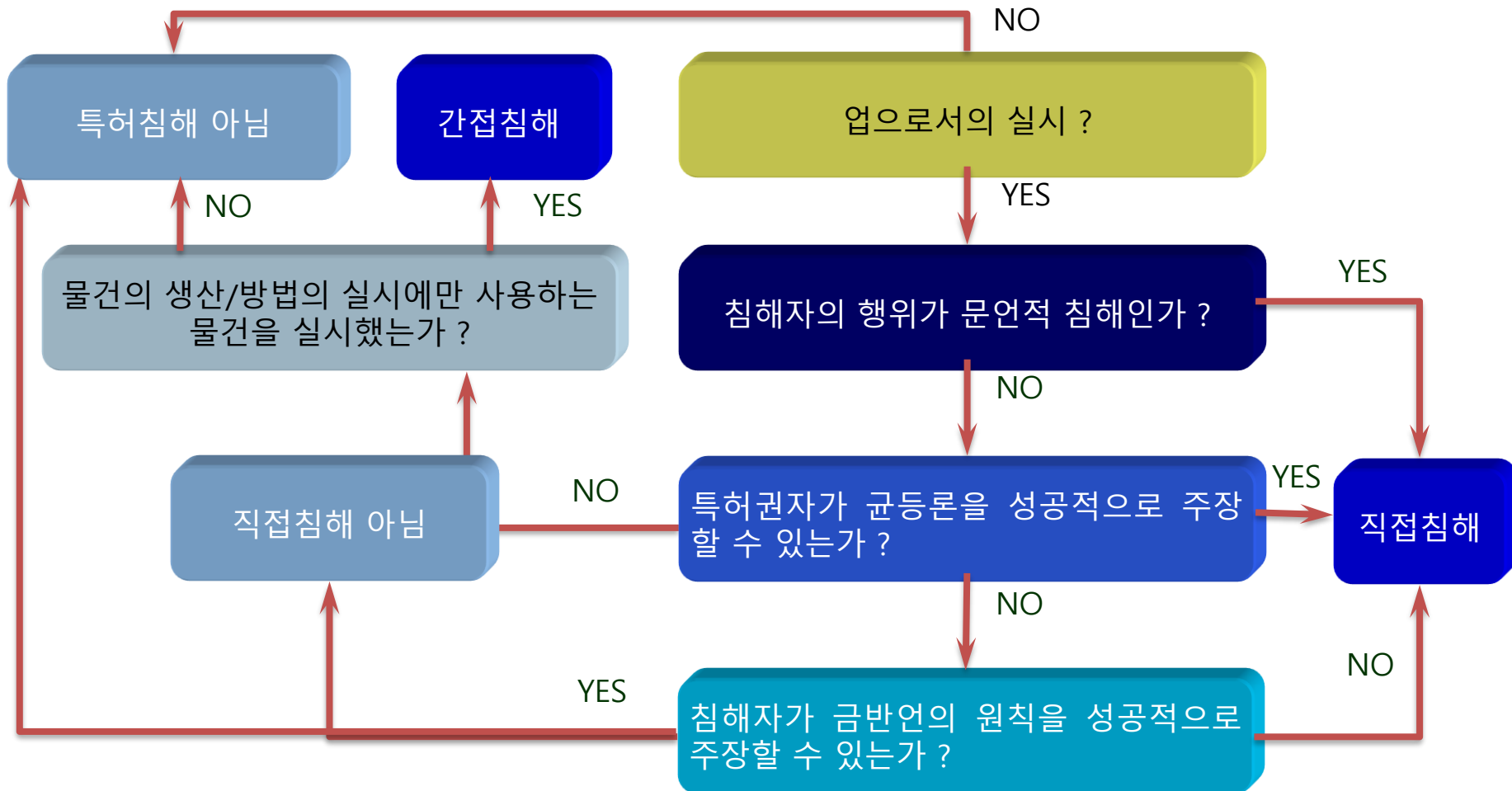
1 지식재산권에 따른 효력범위

| 적극적 효력 | | 소극적 효력 |
|---------|------|------------------------|
| 특허·실용신안 | 청구범위 | 청구범위: AER, 균등론, 간접침해 등 |
| 상표 | 동일 | 동일·유사 |
| 디자인 | | |

2 특허권의 침해판단 개요



2 특허권의 침해판단 과정



2 특허권의 침해판단 과정

적극적
요건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기술적 사상 및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

치환 가능성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냄

치환 자명성

치환 자체가 당업자가 당연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자명

소극적
요건

자유실시발명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이거나 이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음

금반언의 원칙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출원 경과 중 의식적으로 제외되지 않은 경우

▪ 특허권 보호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짐 (AER; All Elements Rule/구성요소완비의 원칙)
- 균등론, 간접침해 등

- ✓ **유효한 특허권의 존재:**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 중이어야 함
- ✓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의 실시:** 고의,과실을 가리지 않음
- ✓ **업으로서의 실시:** 사업규모의 실시여야 하며 가정적,개인적 실시는 특허권의 침해가 아님 / 영리, 비영리 가리지 않음

✓ **구성요소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원칙

Part 3. 지식재산 보호: Theme 1. 지식재산권의 보호범위

특허권 보호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짐 (AER; All Elements Rule/구성요소완비의 원칙)
- 균등론, 간접침해 등

✓ 구성요소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원칙

| | 특허발명(청구항) | 확인대상발명 (실시발명) | 침해여부판단 |
|--------|----------------|------------------|---------------------------|
| 부가의 원칙 | 1. a+b+c를 갖는 X | X : 구성요소 a+b+c | ○ |
| | | X : 구성요소 a+b+c+d | ○ |
| 생략법칙 | 1. a+b+c를 갖는 X | X : 구성요소 a+b | 1. 원칙 → X 2. 예외 → 간접침해 |

✓ **간접침해** : 특허권의 침해가 아니지만 특허권 침해로 인정해 주는 사항(타용도가 없을 것)

▪ 특허권 보호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짐 (AER; All Elements Rule/구성요소완비의 원칙)
- 균등론, 간접침해 등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는 $a+b+c$ 인데, 확인대상발명이 $a+b+c+d$ 라면?

- 1)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침해인가?
- 2) 확인대상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등록받을 수 없는가?
- 3)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등록받는 경우 $a+b+c+d$ 는 누가 실시 할 수 있는가?

크로스라이센스(상호실시권)

후 특허발명의 실시가 선 특허권자 및 후 특허권자 모두에게 불가능한 경우 양사가 맺는 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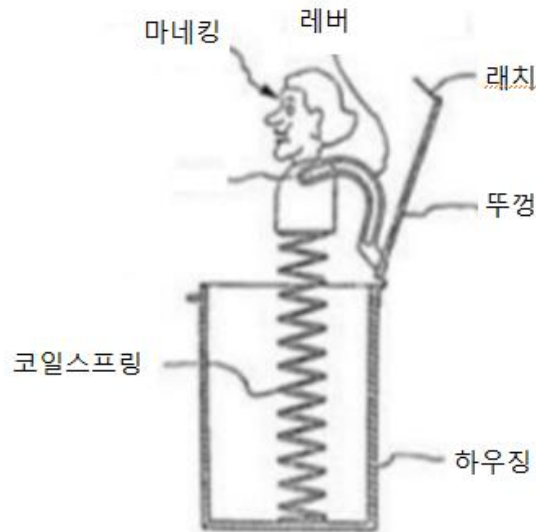
Part 3. 지식재산 보호: Theme 1. 지식재산권의 보호범위

특허권 보호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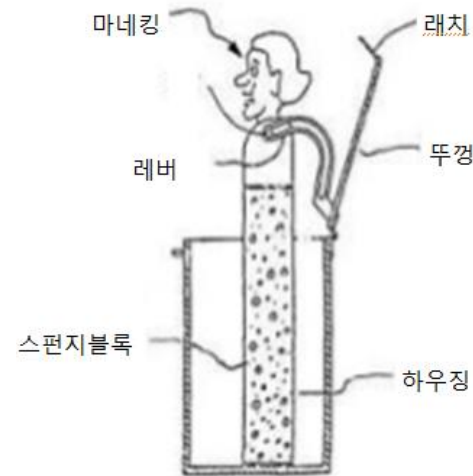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짐 (AER; All Elements Rule/구성요소완비의 원칙)
- 균등론, 간접침해 등

✓ 구성요소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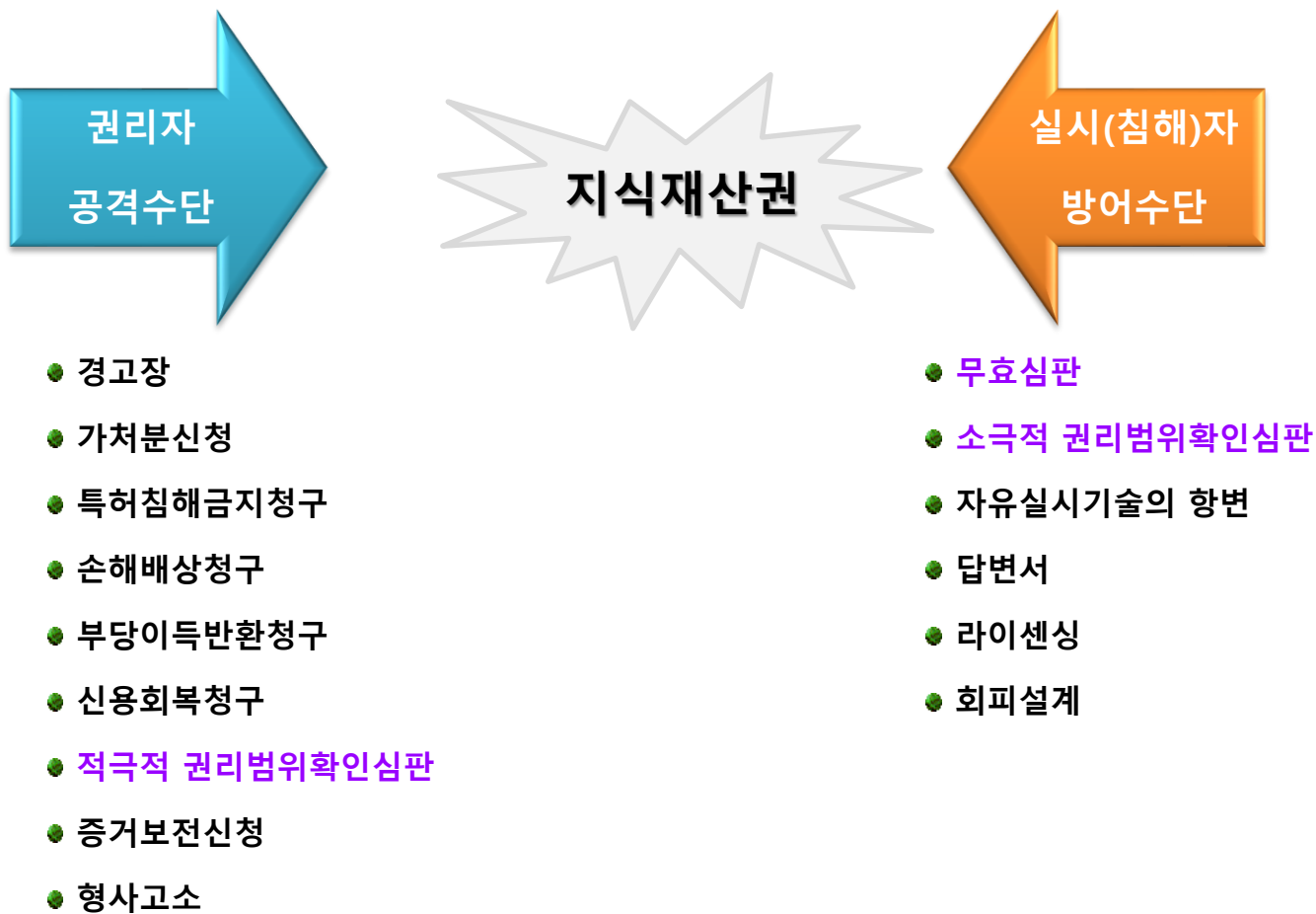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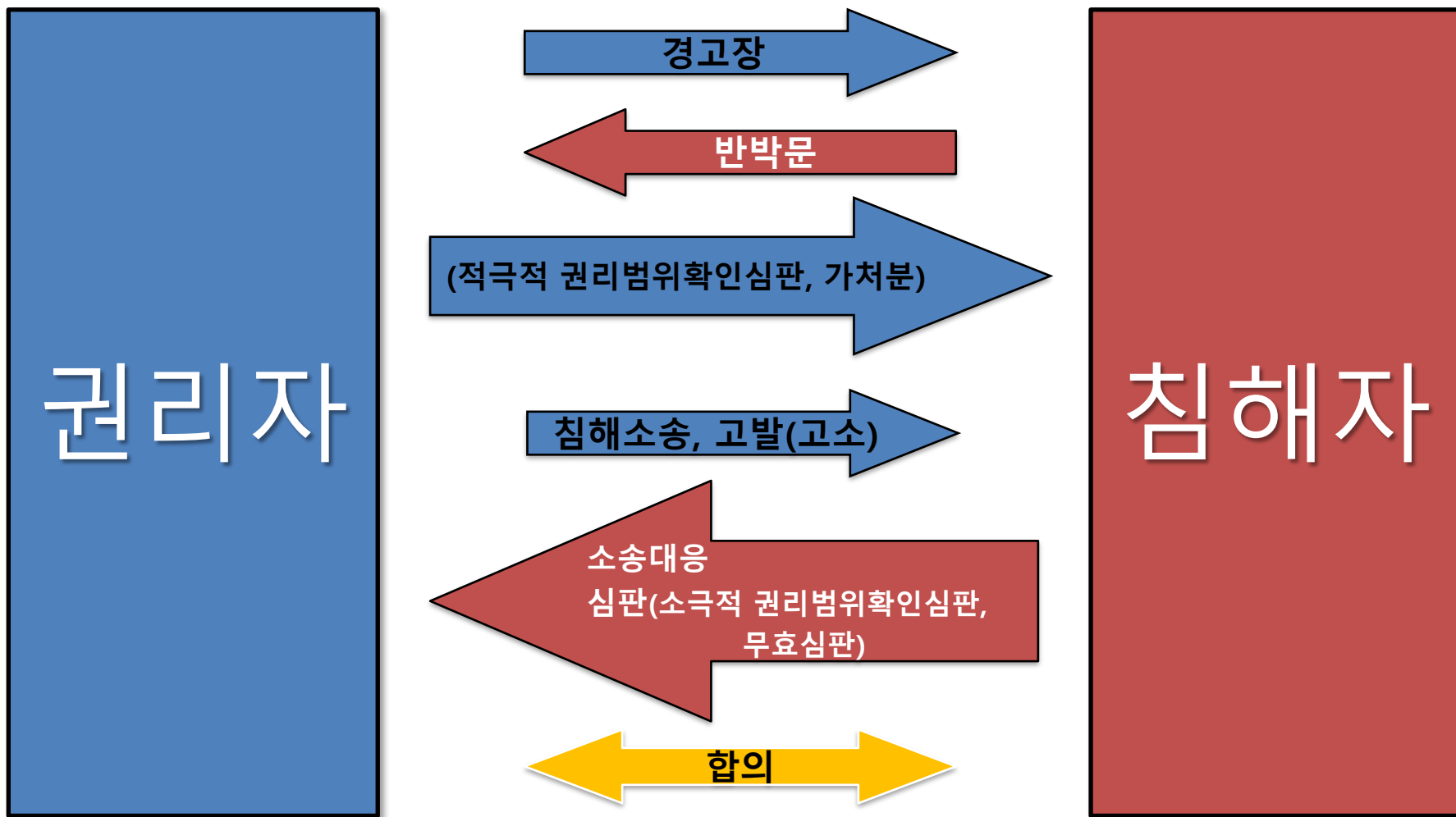


등록특허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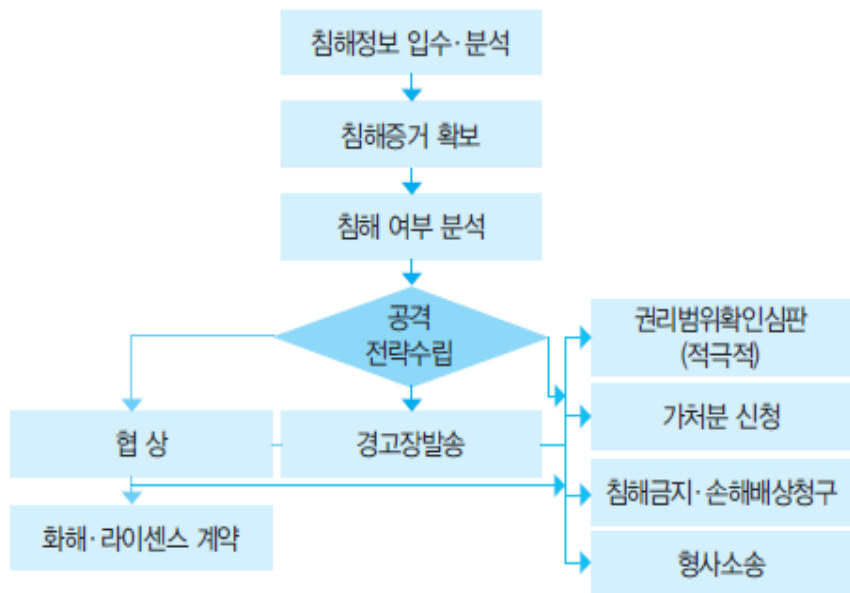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Part 3. 지식재산 보호: Theme 2. 특허권 행사 및 침해주장의 대응

❖ 특허권 침해시, 권리자의 대응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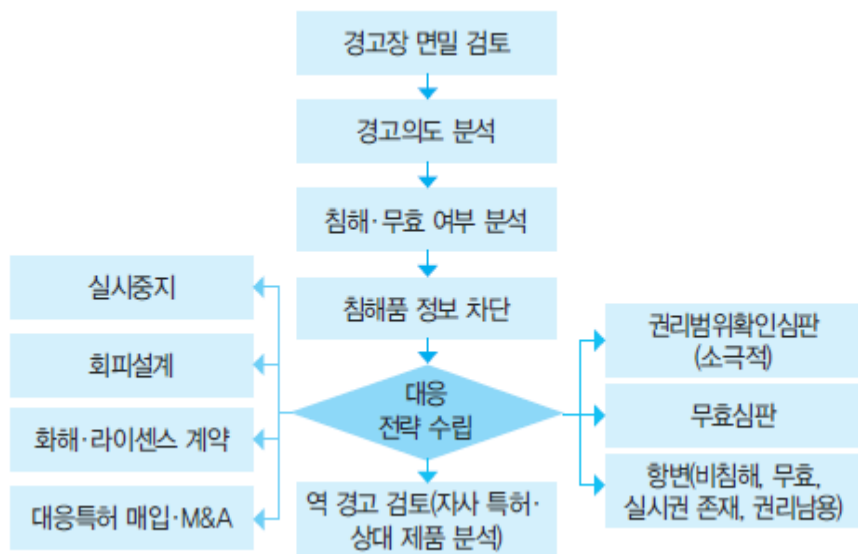


❖ 특허권 침해시 권리자의 사전조치

| | |
|---------|--|
| 침해정보 입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특허공보 모니터링 • 경쟁사 인터넷 홈페이지, 카탈로그, 매뉴얼 조사 • 신문, 인터넷 기사, 광고선전물, 박람회, 전시회 조사 • 거래선 조사 |
| 입증자료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해품 구입 : 최소한 2개 이상 구입(분해·완제품) • 영수증 보관 • 전문분석기관 의뢰 : 침해입증 곤란한 경우 • 손해배상 입증자료 확보 |
| 침해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포대 검토 • 침해 여부 및 자사 특허무효 여부 분석 • 회피설계 검토 • 전문가 감정 |
| 침해자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해자 사업 분야 • 매출규모 및 특허현황 • 분쟁현황 및 관련 특허소송 이력 • 자본 현황 |

Part 3. 지식재산 보호: Theme 2. 특허권 행사 및 침해주장의 대응

❖ 특허권 침해시 실시자의 대응 흐름도



❖ 특허권 침해시 실시자의 사전조치

| | |
|---------|---|
| 경고내용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요건 만족 여부 • 특허서지사항 검토(존속기간, 연차료 납부 등) • 특허 권리관계 확인 • 경고받은 제품 기초조사 |
| 경고의도 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중지·라이선싱·단순경고 등 • 업계 침해동향 조사 • 발송 주체 : 법률사무소, 직접 등 • 권리자 성격 : 경업자, 특허괴물, 개인, 대학 등 |
| 침해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포대 검토 • 침해 여부 및 타사 특허무효 여부 분석 • 회피설계 검토 • 전문가 감정 |
| 권리자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자 사업 분야 • 매출규모 및 특허현황 • 분쟁현황 및 관련 특허소송 이력 • 자본 현황 |



▶ 취지 : **특허, 영업비밀 침해시 처벌 수위 상향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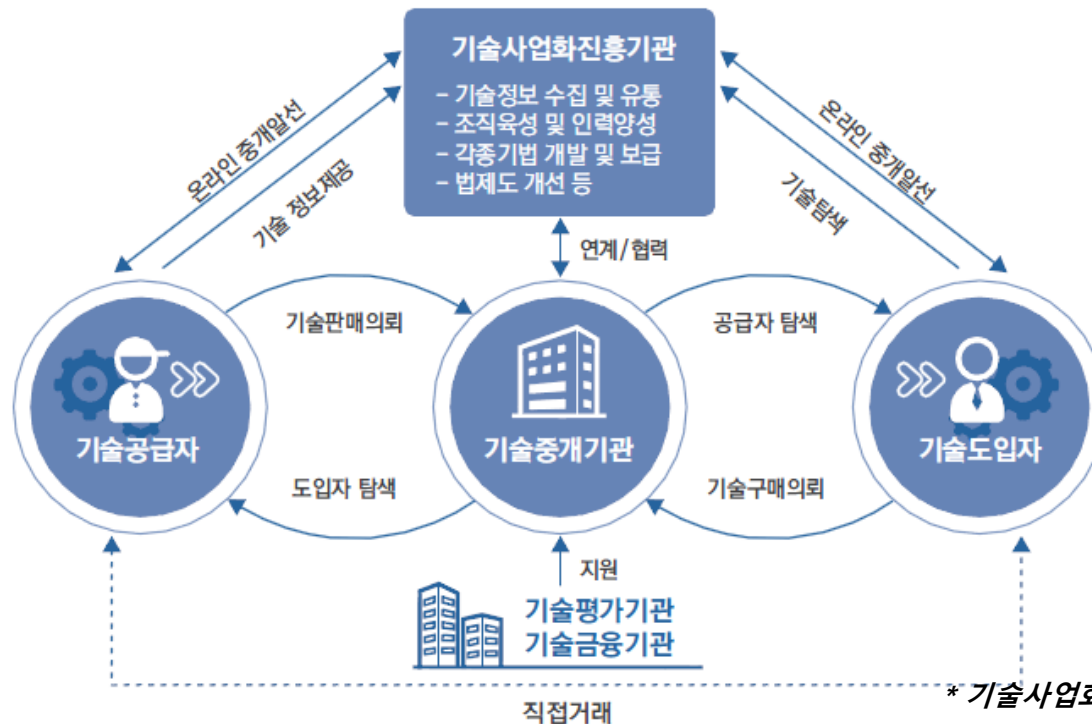
- 영업비밀 및 특허권/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3배 이 내에서 손해배상액 인정가능**
- 손해액 증액시,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여부, 고의나 손해 우려 인식 정도, 침해 기간/횟수, 침해행위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로 인한 피해정도, 침해행위자의 재산 상태, 피해 구제 노력 정도 등, **총 8가지 고려사항**
- 손해액 산정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손해액의 산정범위 확대기반 마련**(한국 법원의 실시료율(약2~5%)은 미국(약 13%)에 비해 낮음)
- **특허권 침해자 입증책임의 전환**: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구체적 침해행위를 제시하면, 피고가 본인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 부인하도록 의무부과



| 구분 | 비용접근법 | 시장접근법 | 수익접근법 |
|----|--|--------------------------------|---|
| 개념 | 해당기술 창출에 소요된 비용을 가치로 산정 | 유사 사례의 시장거래 금액을 가치로 산정 | 해당 기술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산정 |
| 장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산출을 위한 투입 비용 도출 측정의 용이성 | 시장 기능을 이용한 적정 가격 (비교 가격)을 도출 |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수익의 예측 및 이의 현재가치화를 통해 가치를 측정 |
| 단점 | 투입비용과 향후 기대수익과의 관련성이 낮아 신뢰도가 낮음 | 기술거래 유통시장의 미발달/미공개로 시장 접근의 어려움 | 미래가치의 예측, 기술 기여도 분석 등 자의성 및 오차가 개입 |
| 사례 | 대규모 특허매각 타자산과 연계 | 라이선싱(전용/통상) | 현물출자를 통한 기술이전 |

1 지식재산 라이선스, 기술이전 의의

-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 수요자로 이동하여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는 과정
-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용하는 것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이전 업무매뉴얼 및 표준계약서」)
-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 지식재산 라이선스/기술이전 유형

| | |
|---|--|
| <p>기술양도 <i>Assignment</i></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보유자가 기술도입자에게 기술의 소유권을 이전 |
| <p>실시권 허락</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방식 ☑ (참고) 크로스 라이선스 |
| <p>기술지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의 적용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 ☑ 기술양도 또는 실시권 허락과 병행하여 이루어지기도 함 |
| <p>공동연구 <i>Cooperative Research</i></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 목적으로 기술보유자와 기술도입자가 공동연구를 수행 |
| <p>기술창업</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보유자의 연구자 등이 직무발명을 이전받아 창업하거나 창업에 참여하는 방식 |
| <p>합작투자 <i>Joint Venture</i></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보유자와 기술도입자가 합작하여 제3의 기업을 설립 ☑ 기술보유자가 공공연구기관인 경우, 통상 기술의 현물출자를 통해 참여 |
| <p>인수·합병 <i>M&A</i></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도입자가 사업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경영인프라를 보유한 민간기업 등 기술보유자를 인수합병하여 사업화 진행 |

3 지식재산 라이선스/기술이전의 고려사항

- ☑ 용어의 정의, 실시권의 내용, 국외실시, 실시기간, 실시대가, 경상기술료 계산, 기술의 개량, 비밀보장, 면책, 신의성실의 의무, 불가항력, 계약의 해지, 일부 무효의 효과, 손해배상, 명칭사용, 계약의 변경, 중요사항의 변경, 분쟁해결, 계약의 효력, 해석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 계약서를 작성함

계약당사자의 확정(명칭, 주소)

계약 대상 특정(특허, 실용신안, 노하우 등)

기술이전의 형식(양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등)

선수금(Advance fee)

보상금(Compensation): 로열티율, 로열티기준 등

로열티 지불시기

지역확정(Territorial Rights)

계약기간

해지권(Termination Rights)

재허락권(Sub-Licensing Rights)

계약갱신에 대한 사항(Options to Renew)

감사(Audit): 시기 및 고지, 감사비용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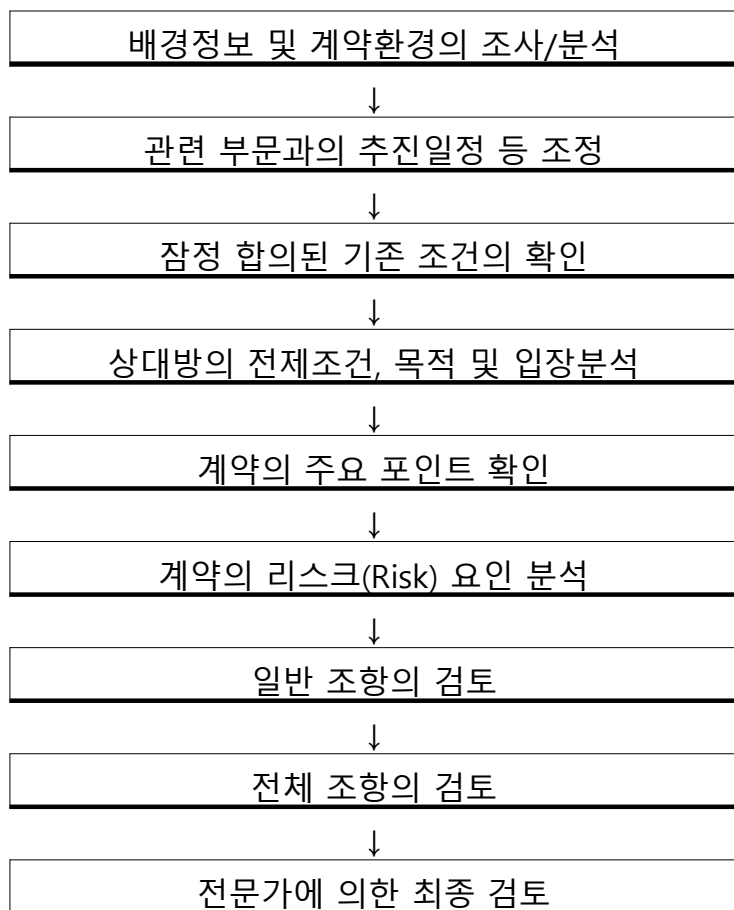
비밀보장(Confidentiality)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계약승계사항

기술이전
계약 체결

3 지식재산 라이선스/기술이전의 계약체결 절차



배경정보 : 당해거래 및 상대방 관련정보
 환경정보 : 법규, 제도, 시책, 관습 등에 관한 사항

관련 부문의 의견 반영 목적

신규 참여자 또는 외부 전문가 주지 목적

필요시 질문서 활용

중요도에 따른 배열, 법적 강제가능성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의 예측 및 억제 방안

체크리스트의 (대조)활용

주요 계약, 특수 항목 등

A grayscale photograph of a group of people sitting around a wooden table in a meeting. A laptop is open on the table, and there are several documents, glasses of water, and a pair of glasses. The scene is dimly lit, with a soft glow from the laptop screen. The text 'Q&A' is overlaid in the center in a white, sans-serif font.

Q&A

감사합니다!